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서

2006. 04. 26

전북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가칭)전북제일학사 주식회사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서

2006. 04. 26

전북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가칭)전북제일학사 주식회사

목 차

전 문

제1장 총칙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2
제3조(용어의 정의)	2
제4조 (해석)	10
제5조 (이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10

제2장 기본약정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1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1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2
제9조 (소유권의 귀속)	12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2
제11조 (협약의 성실히행)	13

제3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민간투자비)	13
제13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13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4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5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5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5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계, 공사의 도급)	16
제18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16
제19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17
제20조 (설계, 인허가 등)	17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18
제22조 (공사기간)	19
제23조 (공사의 착수)	19

제24조 (공정관리)	19
제2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20
제26조 (문화재)	21
제27조 (사업이행보증)	21
제28조 (지체상금)	22
제29조 (보험가입)	23
제31조 (기성검사)	24
제32조 (민원처리)	24
제33조 (건설사업관리)	24
제34조 (부속시설)	25
제35조 (준공 전 사용인가)	25
제36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26
제37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26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28
제39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28
제40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28
제41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29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0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30
제44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2
제45조 (경미한 사업)	33

제7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46조 (성과의 측정 및 보고)	33
제47조 (성과의 점검)	34
제48조 (성과의 평가)	35
제49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35
제50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36
제51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36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52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37
-----------------------	----



제53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조정)	37
제54조 (시설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	38
제55조 (운영비의 산정)	39
제56조 (운영비의 변경)	39
제57조 (운영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40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58조 (보상업무 등)	41
제59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41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0조 (위험배분의 원칙)	42
제61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2
제62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3
제63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44
제64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46
제11장 협약의 종료	
제6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7
제66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48
제67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49
제68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50
제69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51
제70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51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71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52
제72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2
제73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53
제74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53
제75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54
제13장 분쟁의 해결	
제76조 (분쟁의 해결)	54

제77조 (중 재)	55
제14장 기타사항	
제78조 (협약의 변경)	55
제79조 (협약의 수익자)	56
제80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56
제81조 (일부무효)	56
제82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57
제83조 (비밀유지)	57
제84조 (통지)	57
제85조 (언어)	58
제86조 (준거법)	59
제87조 (협약의 효력)	59

[별 표]	
[별표01] 본 사업의 개요	60
[별표02]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62
[별표03] 총민간투자비(총괄)	63
[별표03-1] 총민간투자비(전북대)	64
[별표03-2] 총민간투자비(전주교대)	65
[별표04] 약정투자금 투입예정일정	66
[별표05] 보험가입계획서	67
[별표06] 부속시설	68
[별표07]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총괄)	69
[별표07-1]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전북대학교)	70
[별표07-2]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전주교육대학교)	71
[별표08] 시설임대료 산정방법	72
[별표09]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전체)	73
[별표09-1]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전북대학교)	74
[별표09-2]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전주교육대학교)	75
[별표10]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총괄)	76
[별표10-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전북대학교)	77
[별표10-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전주교육대학교)	78
[별표11] 관리운영권의 인계	79
[별표12] 해지시지급금	80
[별표13] 재무모델	81

[부 록]

[부록01] 성과요구수준서	82
[부록0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170
[부록0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	17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 문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이하 포괄적으로 “주무관청” 이라 한다)는 BTL(Build-Transfer-Lease)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생활관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학생생활관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2005년 05월 25일 (전북대학교 고시 2005-01호)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06년 02월 22일 (가칭)전북제일학사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이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006년 4월 26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2월 23일 준공에 이르렀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이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규모는 별표0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③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간에 이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 | | |
|----------------|---------------|
|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 인허가 등 행정지원 |
| 2.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 실시계획의 승인 |
| 3.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 업무감독 및 기성검사 |
| 4. 시설투자의 완료 |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 |
| 5. 시설의 기부채납 | 관리운영권의 설정 |
| 6. 시설의 임대개시 | 시설의 임대개시 |
| 7.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설의 이용 |
|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 성과의 점검 및 평가 |
| 9. 차입금 상환 및 배당 |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지급 |
| 10. 관리운영권의 인계 | 관리운영권의 인수 |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BTL(Build-Transfer-Lease)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며,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학생생활관(2개 지역)과 전주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1개 지역)을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②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표06(부속시설)을 부속시설로 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③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시설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본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로 회수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산률” 이라 함은 사업수익률 중에서 오(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되는 위험보상률을 말한다. 이 협약상 가산률은 영점오오퍼센트(0.55%)로 하며, 사업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2. “건설기간” 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30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697호(2005.11.8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설이자” 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6. “공사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7. “공사기간” 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공사도급계약” 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9. “공사비” 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말한다.
10. “공사착수일” 이라 함은 제23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제출된 착공계에 착공연월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11. “관계기관” 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2. “관리운영권”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 관리, 운영, 사용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받는 본 사업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4. “국가계약법” 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7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말한다.
15. “기본재무모델” 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6. “기준이자율” 이라 함은 그 산정시점의 직전 1 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율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17. “기준재무모델” 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8. “담보권” 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9. “대리은행” 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0. “대체사업자” 라 함은 제72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1. “매수청구권” 이라 함은 이 협약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22. “매수청구인정통지일”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를 인정하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
23. “문화재” 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24. “민간투자법” 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67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민간투자법시행령” 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 188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민간투자법령”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은 2005년 4월 29일자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5-1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또는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8. “반기” 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9. “본 사업부지” 라 함은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30. “본 사업시설”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시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1. “부속시설” 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제2조제2항의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32. “분기” 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3. “불가항력 사유” 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34. “비교채무모델” 이라 함은 기준채무모델에 자금제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채무모델을 말한다.
35. “BTL 민간투자사업 (또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36. “사업계획서” 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37. “사업기간” 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38. “사업년도” 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 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39.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이 협약 제52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40. “사업시행자”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가지는 자로 지정하는 (가칭)전북제일학사주식회사를 말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41.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 제49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2.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43.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비교대상이 되는 어느 기간의 기준 시점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동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이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적용한다.
44.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5.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2005년05월25일자 전북대학교 고시2005-1호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서를 포함한다.
46.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47.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말한다.

48. “실시설계” 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작성하여 실시계획과 함께 제출하여 주무관청인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관련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등의 설계로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49. “영업일” 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50. “운영비”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임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51. “위험물” 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2. “유지관리” 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여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3. “이 협약” 이라 함은 이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4. “인허가” 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55. 일(日)” 또는 “날” 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56. “자(者)” 라 함은 개인, 회사, 합작회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57. “자금재조달(Refinancing)”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최근 자금차입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의 변경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ROE)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8. “자금차입계약”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이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59.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60. “주무관청” 이라 함은 달리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전북대학교총장, 전주교육대학교총장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61. “준공” 이라 함은 이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62. “준공예정일” 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이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63. “준공일”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이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64. “지장물” 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65. “채권금융기관”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포함)를 포함한다.
66. “총민간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표03(총민간투자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67. “총민간투자비” 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내역은 별표03(총민간투자비)과 같다.
68. “출자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73

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 승계인을 포함한다.

- 69. "출자예정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70. "해지시 지급금" 이라 함은 제68조(해지시 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이 협약의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71. "협약당사자" 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 (해석) ①이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변경을 포함한다.

이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 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이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이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이 협약을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된다.

④이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 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사업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이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⑥ 이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5조 (이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①이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이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 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이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에 있어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이 협약
4. 시설사업기본계획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장 기 본 약 정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이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전북제일학사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이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이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및 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 이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에 대한 정부지급금의 청구,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이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이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타인자본조달 확약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채권금융기관과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 또는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를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이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귀속된다. 단, 각 대학에 귀속되는 시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이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이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이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민간투자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이 협약 제37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임대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단, 이 협약 제37조 제8항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분준공 확인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해당시설의 임대개시일로부터 기산하고, 부분준공은 각 주무관청별로 별표01(본 사업의 개요)의 본 사업시설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 하며, 임대개시일은 준공일 익일로 한다.

제11조 (협약의 성실히행) ①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3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민간투자비)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48,281~~^{43,124}백만원(전북대학교: ~~38,607~~^{32,466}백만원, 전주교육대학교: ~~4,674~~^{4,659}백만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03(총민간투자비)과 같다.

제13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①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3항 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투자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당 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이 판단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전주교육대학교에 해당하는 총민간투자비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주관대학인 전북대학

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6. 공사책임감리계약(또는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공사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해당 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이 당해 대학과 관련된 본 사업 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 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 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 되는 경우

③제2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총민간투자비 등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해당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에 통지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전주교육대학교는 설계변경을 승인을 할 경우 그 내용을 주관대학인 전북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63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64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와 이 협약 제63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 제64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 협의)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투자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투자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이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기자본, 타인자본 및 예비재원의 조달은 사업 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사업시행자는 출자예정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 및 별표04 (약정투자금 투입예정일정)에 따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적기에 조달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동안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유지하면서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등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04 (약정투자금 투입예정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 조달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 “설계자” 라 한다), 시공회사(이하 “시공자” 라 한다)와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①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과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③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 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설계, 인허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이 협약,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해당 주무관청(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주무관청별 본 사업시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 승인시의 조건사항 이행도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한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승인조건 사항의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은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③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각 주무관청(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관련위원회(시설계획전문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업기본계획, 질의응답서, 관련법령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지적사항은 실시설계에서 제외시킨다.

④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평가위원의 설계분야 지적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단, 시설사업기본계획, 질의응답서, 관련법령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지적사항은 실시설계에서 제외시킨다.

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질의응답서, 관련법령, 사업계획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무관청이 지적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한다. 단 부합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의 실시설계 심의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되며,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및 이 협약,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각 주무관청별로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③이 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실시계획승인신청 절차에 법률적 하자가 있거나, 동 승인을 함이 관계법률에 위반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기초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공사기간) ①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730일로 한다.
②제13조(총민간투자비의 변경)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③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며, 주무관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23조 (공사의 착수) ①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보상지연, 설계변경등 공사착공을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사정으로 착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협의에 의한다.

제24조 (공정관리) ①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담팀으로 하여금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각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 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각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10% 이상 지연될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해당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2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①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관련기관(해당 주무관청 포함)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제63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④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협약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에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26조 (문화재) ①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재를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화재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발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재 발굴은 해당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추가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처리는 이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⑤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27조 (사업이행보증) ①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민간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또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내지 보증보험 회사에 의한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동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에 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이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 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④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이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 증권(또는 지급 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전북대학교)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제공한다.

제28조 (지체상금) ①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 예정일(이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 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별표03의 총민간사업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누적액이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9조 (보험가입) ①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표05(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한다.

②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무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통보한다.

제30조 (업무감독 및 검사) ①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설시공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분기마다 1 회 이상(분기시작 15일 이내) 해당 주무관청에게 설명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이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반기마다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다음 반기 시작 후 15일 이내)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각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이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당 주무관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한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31조 (기성검사) ①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해당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32조 (민원처리)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음, 악취,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각 주무관청에 각각 보고한다.

②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 영업손실보상, 본 사업의 위치 변경 등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관련된 민원은 해당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③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 민간투자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투자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⑤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 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33조 (건설사업관리) ①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

업체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책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이 협약의 부록01(성과요구 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주무관청(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각각 감독한다.

③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전북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전북대학교)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 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제30조 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주무관청(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부속시설) ①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시설규모 및 범위는 별표06(부속시설)와 같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 하에 시행토록 한다.

③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투자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제35조 (준공 전 사용인가) ①이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인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협약 제37조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해당 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에 준공 전 사용인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제10조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기 운영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6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37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임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④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한다.

⑤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이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정부지급금의 결정, 각종 규정(시설물유지관리규정, 학생생활관운영규정, 부속시설운영규정등)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이 협약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지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 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부분준공의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⑨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각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이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39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 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각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 시설을 학생생활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러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⑤ 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0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본 사업시설 및 부지내의 청소, 조경, 보안경비

3. 본 사업시설의 환경위생관리

4.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도

5.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7. 부속시설의 영업등의 운영업무 및 유지관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9. 기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47inch
100mm

제41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①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 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 회사(이하 "운영자" 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이를 각 주무관청(전북 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운영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운영의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제2항과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협약의 출자자 및 출차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90일)전까지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각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감량)

③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56조(운영비의 변경)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①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이 협약 제43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각 주무관청은 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제8장(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관리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주무관청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사업시행자)부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주무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 이외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함에 있어 범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⑥각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사업시행자는 각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3자로 하여금 전체시설, 또는 일부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⑧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각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⑨장기수선충당금은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하며, (별도계좌에)관리하여야 한다. 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점에 미집행한 금액은 각 주무관청에 관련 증빙서류(집행내역, 영수증, 통장, 통장에 날인된 도장)와 함께 인계한다.

⑩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안에 관련법규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되, 본 사업시설의 상태에 따라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는 각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⑪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북대학교(또는 전주교육대학교)학생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이 협약과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한다.

⑫운영설비대체비의 관리 및 집행 등은 본 조를 준용한다.

⑬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4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시스템에 의한 부속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다음 월의 10일까지 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 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④각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제3항의 운영실적에 대한 적부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한다.

⑤각 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 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49조의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실적을 제4항의 조사·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하게 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항목 7-1)

⑥제5항의 재조사를 한 결과, 재조사한 운영실적에서의 순이익(A)이 별표 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C)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에서의 운영순이익(B)이 별표 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C)보다 적거나, 이와 같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A-C)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각 주무관청에게 반환한다. 단,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단순한 계산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조 제8항에 따라 정산처리 하기로 한다.

⑦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매분기 마다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별표 07(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매 반기 마다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 별표 07(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50:50로) 분배하고, 수익의 환수는 다음 분기 말까지로 한다.

⑨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5조 (경미한 사업)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 체결 후 각 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주무관청(전북대학교 또는 전주교육대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의 사항은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46조 (성과의 측정 및 보고) ①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의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사업시행자는 월보고서를 당해 월의 다음 달 5일까지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기보고서를 당해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분기의 경우, 월보고서를 함께 제출).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대한 성과측정을 정확하게 할 책임을 부담하며, 제1항의 측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제1항에 따라 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성과측정의 결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③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7조 (성과의 점검) ①각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제46조의 월보고서를 토대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수준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한다.

②각 주무관청은 제46조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 상황을 검증(매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하고, 성과수준이 부록 01(성과요구수준서) 및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다.

③각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수준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협력한다.

④제2항의 성과점검을 위해 각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한다.

1. 전원장치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량
2.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3. 시설의 현장에 대한 불시 검사
4. 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족 접수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⑤각 주무관청은 제49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한다.

⑥각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⑦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8조 (성과의 평가) ①각 주무관청은 제49조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성과평가위원회는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성과의 측정·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 3개 분야에 대해 매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한다.

③제2항의 서비스만족도 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각 주무관청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각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자시행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이 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이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49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각 주무관청은 제48조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라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측 2명,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 1명)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

평가
제안평가

학생대표
자치위원장

주무관청 2
공무원 1

③평가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선임한다.

④성과평가위원의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⑤이용자 대표는 (가칭)학생생활관 자치회에서 선정 추천하며,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⑥ 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50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①성과평가위원회는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 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체결 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록01(성과요구 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성과평가위원회 전원의 합의에 의해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51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제48조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따라 이 협약에서 결정된 당해 분기의 운영비 지급금을 제8장(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②본 장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내용에 허위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었던 당해 분기의 운영비 지급금 상당액을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급금의 감액 또는 가산지급에 관하여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3분기 이상 제47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제41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운영자의 변경 요구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합의에 의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협약 제41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52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①협약체결시의 사업수익률은 시설사업기
본계획고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오(5)영업일간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오(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에 가산율을 합한
[4.37]%(세전경상수익률)이다. 다만, 이 협약체결시의 가산율(0.55%)은 본
조의 사업수익률 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임대개시시의 최초 사업수익률(이하 “최초 사업수익률” 이라 한다)은 본 사
업시설의 준공일 직전 오(5)영업일간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오(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에 가산율을 합하여 산정되며, 이와
같이 산정된 최초 사업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③사업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일 후 매 5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조정기준일” 이라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조정은 매 조정기준일의 직전
오(5)영업일간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오(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
수익률의 산술평균값에 가산율을 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이 협약에 따른 사업수익률의 산정 또는 조정에 있어 5년 만기 국고채 최종
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 중 5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국고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
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53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조정) ①이 협약에 따라 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임대료는 별표08(시설임대료 산정방법)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최초시설임대료 적용기간”)동안 매분기별로 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는 제52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초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시설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시설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최초 시설임대료 적용기간 후의 시설임대료는 제52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제3항에 정한 매 조정기준일에 조정된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조정기준일에 다음 조정기준일 까지 지급될 시설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시설임대료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④이 협약 제13조(총민간투자비의 변경)에 따라 총민간투자비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설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시설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⑤본 사업의 시설임대료 지급기간(본 사업시설 임대차 존속기간)은 이 협약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동일한 20년으로 한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54조 (시설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각 주무관청은 제53조(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조정)에 따라 산정 또는 조정되는 시설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 시설임대료를 다음 분기 개시 전 십오(15)영업일 전까지 각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각 주무관청은 다음 분기개시 후 구(9)영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등록신청일 이전까지 시설임대료 수령용도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관리운영권 등록신청 시 동 예금계좌번호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각 주무관청의 시설임대료 지급은 동 계좌에의 이체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기로 한다.

③주무관청이 이 협약에 정한 시설임대료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각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에 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전날까지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될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55조 (운영비의 산정) ①이 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각 주무관청(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5년 5월 25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26,316,836천원(전북대학교: 23,474,618천원) 전주교육대학교: 2,842,218천원)이며, 그 내역은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과 같다.

별표 10-1

②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지급할 운영비는 본조 제1항의 불변가격 기준 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 분기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경상화된 가격으로 산정한다.

③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각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각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사업시설의(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56조 (운영비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협약에서 결정된 운

영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각 주무관청이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57조 (운영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각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개시 후 분기별로 제55조(운영비의 산정), 제56조(운영비의 변경)에 의해 산정된 운영비를 지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별 운영비를 다음 분기개시전 십오(15)일 이전까지 각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따라 매 분기별 운영비를 지급한다.

1. 매 분기별 운영비는 다음 분기 개시 전(2)영업일까지 지급한다.
2. 임대개시 후 최초 분기의 운영비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없이 지급하며, 최초 분기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분기의 운영비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3. 임대개시 후 최종분기에 대한 운영비는 위 제1호에 정한 일자에 지급되지 아니하며, 최종분기에 대한 성과평가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③ 주무관청이 이 협약에 정한 운영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각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전날까지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58조 (보상업무 등) ①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의 공사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관계 관청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부담금을 지급함이 없이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및 무상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본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각 주무관청에서 각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한다.

③각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처리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59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①각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각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각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④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⑥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0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61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66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제62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및 제63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 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이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1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47조(성과의 점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이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어느 시점까지의 제51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감액총액이 그 기간까지의 각 주무관청이 지급한 정부지급금(운영비) 총액의30% 이상을 초과하였을 경우. 단, 운영기간 개시 후 12개월까지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액총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동안 감액된 부분 중 제51조에 따라 다시 가산되어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2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 이 지연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이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각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5. 이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이 이 협약에 따른 지급예정일보다 0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및/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손실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③ 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63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 물, 지장물이나 유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정책 혹은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②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각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각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다. 위 ‘가’ 호 및 ‘나’ 호에서의 보험은 이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의 수령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각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시설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 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시설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각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⑥각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 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용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 제65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⑧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64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②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③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④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11장 협약의 종료

제6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이 협약은 제66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의하여 해지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라 매수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이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2개월전에 각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각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01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 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입주인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을 말하며, 각 기기의 효율과 기능이 정상적 수준이어야 하고 그 수준에 대하여는 위 인계당시 사회통념, 본 사업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1(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66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제6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 61조 제1항 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62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3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 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에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동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이 협약은 해지된다.

⑤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이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2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⑦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67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각 주무관청은 이 협약 제68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 원리금이 있을 경우 각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각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이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③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제68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①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2(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⑤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이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이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이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정부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제66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각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각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각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각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각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각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70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②이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이 협약에 따라 발생 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일방 당사자가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는 계속하여 이 협

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71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민간투자법 또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이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이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72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①제66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한 후 치유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②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③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및 자금 차입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 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④이 조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협의 후 적용한다.

제73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사업시행자인 (가칭)전북제일학사주식회사의 예정출자자 구성 및 예정출자지분은 별표03(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②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5% 미만 출자자라도 사업계획서 평가시 출자자구성의 평가요소에 따라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가 출자 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동일 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 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한다.

제74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사업시행자는 이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제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전북대학교)에 제출한다.

④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제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협약을 변경한다.

⑤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제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자금제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 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이익배분은 89:11로 한다.

②제1항의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자금제조달에 따른 주무관청 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BTL사업시행지침” 편 및 본 사업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제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13장 분쟁의 해결

제76조 (분쟁의 해결) ①협약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이 협약 제77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으로 한다.

④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7조 (중 재) ①이 협약으로부터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 될 수 있다.

②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 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 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 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14장 기타사항

제78조 (협약의 변경) ①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협약상 이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 목들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 되고 협약당

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칙에 따라 이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협약당사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다.

④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이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 시행자에게 이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이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⑤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이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79조 (협약의 수익자)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이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81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 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이 협약 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2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이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83조 (비밀유지) ①협약당사자들은 이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이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이 협약의 조건과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이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84조 (통지) ①이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가. 전북대학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수신 : 전북대학교 총장

참조 : 재무과장 / 시설관리과장

전화 : 063) 270-2051 / 270-2061 팩스 : 063) 270-2059 / 270-2080

나. 전주교육대학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28번지

수신 :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63) 281-7020

팩스 : 063) 281-0102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금호아시아나 빌딩

수신 :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참조 : SOC팀 건축BTL 담당자

전화 : 02) 6303-0400

팩스 : 02) 6303-0745

②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송달된 때” 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5조 (언어) 이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86조 (준거법) 이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87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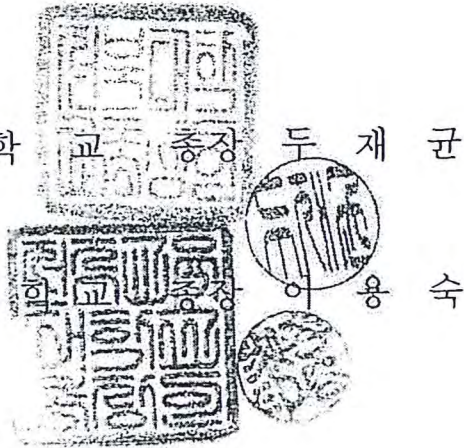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4월 26일

주 무 관 청

전 북 대 학 교 총 장 두 재 균

전 주 교 육 대 학 교 장 용 숙



(가칭)전북제일학사주식회사

대표회사 금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별표 01] - 준공(2009. 2. 23.)

본 사업의 개요

■ 전북대학교

○ 건설 예정지

A지역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학생생활관 부지내

B지역 - 전주시 덕진구 의과대학 부지내

○ 부 지 면 적 : 18,340㎡(A지역-9,540㎡, B지역-8,800㎡)

○ 이 사업시설의 범위

A, B지역 공통 :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에 관한 일체, 운영관리등

A지역 - 공동구 연결(기존에서), 전기인입(교내 변전실에서)

B지역 - 추모비 이전에 따른 시설보완

. 기존 추모비 이전 등

○ 본 사업시설

구 분		A 지역	B 지역	계	비고
본 시설	수용인원(인)	1,800	500	2,300명 이상	비품일체 포함
	연면적(㎡)	31,721.54	9,226.9	40,948.44	
	기 타	관리사무실, 휴게실, 세미나실, 독서실 PC실, 체력단련실, AV실, 탁구장등			“
유지관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등			“
부 속 시 설		[별표 06] 참조			“

■ 전주교육대학교

○ 건설 예정지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대학교내

○ 부 지 면 적 : 9,055㎡

○ 본 사업시설의 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에 관한 일체, 운영관리등
- 기존건물과 연결통로

○ 본 사업시설

구 분		규 모	비고
본 시설	수용인원(인)	256명이상	비품일체 포함
	연면적(㎡)	4,633	
	기 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
유지관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등	“
부 속 시 설		[별표 06] 참조	“

[별표 02] - 준공(2009. 2. 23.)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출 자 자 명	소 재 지	출자 지분율	총민간 투자비 대비비율	구성원의 역 할
금호산업(주)	광주시 서구 광천동 49-1	14%	1.4%	대표사 및 시공사
(유)아산종합건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동2가 818-2	2%	0.2%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주)메트로종합건설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6	2%	0.2%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미건설(주)	전주 덕진 진북 343-5	2%	0.2%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건설공제조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25%	2.5%	재무적투자자
(주)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5%	1.5%	“
삼성생명보험(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15%	1.5%	“
(주)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10%	1.0%	“
금호생명보험(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15%	1.5%	“
출자자수	7	100%	10.0%	

- 주 :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성원의 역할란에는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지역소재중소건설업체 등을 표시 함.
 3)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로 표시 함.

[별표 03] - 준공(2009. 2. 23.)

총 민 간 투 자 비(총괄)

2009. 2. 23.준공기준, 부가세제외, 경상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북대학교 (89.2%)	전주교대 (10.8%)	비고
조 사 비	33	29	4	
설 계 비	1,186	1,058	128	
공 사 비	37,255	33,231	4,024	
보 상 비	-	-	-	
부 대 비	2,252	2,009	243	
설계감리비	1,351	1,205	146	
책임감리(CM)	16	14	2	
사전환경성검토	-	-	-	
환경영향평가비	-	-	-	
교통영향평가비	-	-	-	
문화재조사	8	7	1	
공사보험료	65	58	7	
사업이행보증보험료	36	32	4	
금융부대비	776	692	74	
운 영 설 비 비	736	656	80	
제 세 공 과 금	-	-	-	
영 업 준 비 금	224	200	24	
신주발행비	22	20	2	
개업비	202	180	22	
총 경상 사업비 ①	41,685	37,183	4,502	
건설보조금 ②	-	-	-	
총민간경상사업비③	41,685	37,183	4,502	(=①-②)
건설 이 자 ④	1,438	1,283	155	
총 민 간 투 자 비	43,124	38,466	4,657	(=③+ ④)
총 투 자 비	43,124	38,466	4,657	(=①+ ④)

[별표 03-1]- 준공(2009. 2. 23.)

총민간투자비(전북대학교)

2009. 2. 23.준공기준, 부가세제외, 경상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전북대학교 (89.2%)	비고
조 사 비	29	
설 계 비	1,058	
공 사 비	33,231	
보 상 비	-	
부 대 비	2,009	
설계감리비	1,205	
책임감리(CM)	14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비	-	
교통영향평가비	-	
문화재조사	7	
공사보험료	58	
사업이행보증보험료	32	
금융부대비	692	
운 영 설 비 비	656	
제 세 공 과 금	-	
영 업 준 비 금	200	
신주발행비	20	
개업비	180	
총 경상 사업비 ①	37,183	
건 설 보 조 금 ②	-	
총민간경상사업비③	37,183	(=①-②)
건 설 이 자 ④	1,283	
총 민간 투 자 비	38,466	(=③+ ④)
총 투 자 비	38,466	(=①+ ④)

[별표 03-2] - 준공(2009. 2. 23.)

총민간투자비(전주교육대학교)

2009. 2. 23.준공기준, 부가세제외, 경상기준(단위:백만원)

구분	전북대학교 (89.2%)	전주교대 (10.8%)	비고
조사비		4	
설계비		128	
공사비		4,024	
보상비		-	
부대비		243	
설계감리비		146	
책임감리(CM)		2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비		-	
교통영향평가비		-	
문화재조사		1	
공사보험료		7	
사업이행보증보험료		4	
금융부대비		74	
운영설비비		80	
제세공과금		-	
영업준비금		24	
신주발행비		2	
개업비		22	
총경상사업비 ①		4,502	
건설보조금 ②		-	
총민간경상사업비③		4,502	(=①-②)
건설이자 ④		155	
총민간투자비		4,657	(=③+④)
총투자비		4,657	(=①+④)

[별표 04]

약정투자금 투입예정일정

(단위:백만원)

구 분		총민간투자비			비고
		계	자기자본	타인자본	
합계		43,281	4,329	38,952	
2006년	1/4분기	-	-	-	
	2/4분기	1,484	148	1,335	
	3/4분기	1,756	176	1,580	
	4/4분기	2,851	285	2,566	
	소계	6,090	609	5,481	
2007년	1/4분기	2,223	222	2,001	
	2/4분기	4,945	495	4,450	
	3/4분기	5,496	550	4,946	
	4/4분기	8,858	886	7,972	
	소계	21,522	2,153	19,370	
2008년	1/4분기	7,330	733	6,597	
	2/4분기	7,756	776	6,980	
	3/4분기	582	58	524	
	4/4분기	-	-	-	
	소계	15,668	1,567	14,101	

주 : 1) 경상가격기준

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은 10% 적용

[별표 05]

보험가입계획서

1. 건설기간 중 보험

(단위 : 백만원)

구분	내 용	비고
부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비, 홍수, 바람, 폭풍, 지진, 해일 등) • 기술적 원인 재해(사태, 붕괴, 미숙련, 시공결함) • 인위적 재해(화재, 폭발, 도난 등) 	전위험 담보
목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 물적담보 및 제3자 배상책임 (공사목적물, 설비 및 장비, 잔존물 제거비용 등) • Section II : 운영개시 후 1년간 고정성 비용 	
담보지역	• 건설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 공사착공시점 ~ 공사완공시점(전체 공사기간)	
보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 38,755백만원(공사비 + 감리비) • Section II : 2,080백만원 - 운영초기 12개월간의 고정비 + 지급이자 	
보험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건설공사보험) : 0.13% • Section II (예정이익상실보험) : 0.7% 	
예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건설공사보험) : 50백만원 • Section II (예정이익상실보험) : 15백만원 	

2. 운영기간 중 보험

(단위 : 백만원)

구분	내 용	비고
부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비, 홍수, 바람, 폭풍, 지진, 해일 등) • 기술적 원인 재해(사태, 붕괴, 미숙련, 시공결함) • 인위적 재해(화재, 폭발, 도난 등) 	전위험 담보
목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 물적담보 및 제3자 배상책임 (공사목적물, 설비 및 장비, 잔존물 제거비용 등) • Section II : 기업휴지 	
담보지역	• 본사업장 및 주변	
보험기간	• 운영기간(20년, 매년갱신)	
보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 37,255백만원(시설물의 공사비) • Section II : 939백만원(연평균 고정비+지급이자) 	
보험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재산종합보험) : 0.05% • Section II (휴지보험) : 0.1% 	
예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I (재산종합보험) : 19백만원 • Section II (휴지보험) : 1백만원 	

[별표 06] - 준공(2009. 2. 23)

부속시설

■ 전북대학교

구분	A 지역	B 지역	비고
종류	공동세탁실, 식당, 편의점 커피카페, 스넥바, 피자.치킨, 도서대여점 영어캠프	공동세탁실, 편의점	비품일체 포함

■ 전주교육대학교

구분	실명	비고
종류	공동세탁실, 편의점	비품일체 포함

[별표 07] - 준공(2009. 2. 23.)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총괄)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경상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230,330	23,485	68,439	68,947	69,458	
2010년	283,024	69,974	70,493	71,016	71,542	
2011년	291,515	72,073	72,607	73,146	73,689	
2012년	300,260	74,235	74,786	75,340	75,899	
2013년	309,268	76,462	77,029	77,601	78,176	
2014년	318,546	78,756	79,340	79,929	80,521	
2015년	328,102	81,119	81,720	82,326	82,937	
2016년	337,946	83,552	84,172	84,796	85,425	
2017년	348,084	86,059	86,697	87,340	87,988	
2018년	358,526	88,641	89,298	89,960	90,628	
2019년	369,282	91,300	91,977	92,659	93,346	
2020년	380,361	94,039	94,736	95,439	96,147	
2021년	391,771	96,860	97,578	98,302	99,031	
2022년	403,525	99,766	100,506	101,251	102,002	
2023년	415,630	102,759	103,521	104,289	105,062	
2024년	428,099	105,841	106,626	107,417	108,214	
2025년	440,942	109,017	109,825	110,640	111,460	
2026년	454,171	112,287	113,120	113,959	114,804	
2027년	467,796	115,656	116,514	117,378	118,248	
2028년	481,830	119,125	120,009	120,899	121,796	
2029년	80,283	80,283	0	0	0	
합계	7,419,291	1,861,289	1,838,993	1,852,634	1,866,373	

주) 2009. 2. 23. 준공확인일 기준 부속시설 순이익(부가세제외), 경상금액임.

[별표 07-1] - 준공(2009. 2. 23.)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전북대학교)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경상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227,296	23,175	67,538	68,039	68,544	
2010년	279,297	69,052	69,564	70,080	70,600	
2011년	287,676	71,124	71,651	72,183	72,718	
2012년	296,306	73,257	73,801	74,348	74,900	
2013년	305,195	75,455	76,015	76,579	77,147	
2014년	314,351	77,719	78,295	78,876	79,461	
2015년	323,782	80,050	80,644	81,242	81,845	
2016년	333,495	82,452	83,063	83,680	84,300	
2017년	343,500	84,925	85,555	86,190	86,829	
2018년	353,805	87,473	88,122	88,776	89,434	
2019년	364,419	90,097	90,766	91,439	92,117	
2020년	375,352	92,800	93,489	94,182	94,881	
2021년	386,612	95,584	96,293	97,008	97,727	
2022년	398,211	98,452	99,182	99,918	100,659	
2023년	410,157	101,405	102,158	102,915	103,679	
2024년	422,462	104,448	105,222	106,003	106,789	
2025년	435,135	107,581	108,379	109,183	109,993	
2026년	448,189	110,808	111,630	112,458	113,292	
2027년	461,635	114,133	114,979	115,832	116,691	
2028년	475,484	117,557	118,429	119,307	120,192	
2029년	79,226	79,226	-	-	-	
합계	7,321,585	1,836,776	1,814,776	1,828,237	1,841,797	

주) 2009. 2. 23. 준공확인일 기준 부속시설 순이익(부가세제외), 경상금액임.

[별표 07-2] - 준공(2009. 2. 23.)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전주교대)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경상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3,033	309	901	908	915	
2010년	3,727	921	928	935	942	
2011년	3,839	949	956	963	970	
2012년	3,954	978	985	992	1,000	
2013년	4,073	1,007	1,014	1,022	1,030	
2014년	4,195	1,037	1,045	1,053	1,060	
2015년	4,321	1,068	1,076	1,084	1,092	
2016년	4,450	1,100	1,108	1,117	1,125	
2017년	4,584	1,133	1,142	1,150	1,159	
2018년	4,722	1,167	1,176	1,185	1,193	
2019년	4,863	1,202	1,211	1,220	1,229	
2020년	5,009	1,238	1,248	1,257	1,266	
2021년	5,159	1,276	1,285	1,295	1,304	
2022년	5,314	1,314	1,324	1,333	1,343	
2023년	5,474	1,353	1,363	1,373	1,384	
2024년	5,638	1,394	1,404	1,415	1,425	
2025년	5,807	1,436	1,446	1,457	1,468	
2026년	5,981	1,479	1,490	1,501	1,512	
2027년	6,160	1,523	1,534	1,546	1,557	
2028년	6,345	1,569	1,580	1,592	1,604	
2029년	1,057	1,057	0	0	0	
합계	97,706	24,512	24,218	24,398	24,579	

주) 2009. 2. 23. 준공확인일 기준 부속시설 순이익(부가세제외), 경상금액임.

[별표 8]

시설임대료 산정방법

-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총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 운영기간 중에 매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한다.
-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 균분)산정식

$$\text{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최초 임대료 적용기간)동안 지급될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53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초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 후의 시설임대료는 53조(사업수익률의 산정 및 조정) 제3항에서 정한 매 조정기준일에 조정된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09] - 준공(2009. 2. 23.)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총괄)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경상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2,910,081	299,709	870,124	870,124	870,124	
2010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1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2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3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4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5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6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7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8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19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0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1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2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3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4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5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6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7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8년	3,480,495	870,124	870,124	870,124	870,124	
2029년	570,414	570,414	0	0	0	
합계	69,609,901	17,402,475	17,402,475	17,402,475	17,402,475	

주) 1. 2009. 2. 23. 준공확인일 기준 사업수익률을 반영한 시설임대료 수준이며,
2. 실시협약서 제52조에 따라 조정 됨.

[별표 09-1] - 준공(2009. 2. 23.)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전북대학교)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경상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2,595,792	267,341	776,150	776,150	776,150	
2010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1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2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3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4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5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6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7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8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19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0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1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2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3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4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5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6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7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8년	3,104,602	776,150	776,150	776,150	776,150	
2029년	508,810	508,810	0	0	0	
합계	62,092,031	15,523,008	15,523,008	15,523,008	15,523,008	

주) 1. 2009. 2. 23. 준공확인일 기준 사업수익률을 반영한 시설임대료 수준이며,
2. 실시협약서 제52조에 따라 조정 됨.

[별표 09-2] - 준공(2009. 2. 23.)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전주교대)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경상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9년	314,289	32,369	93,973	93,973	93,973	
2010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1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2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3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4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5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6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7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8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19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0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1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2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3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4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5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6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7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8년	375,893	93,973	93,973	93,973	93,973	
2029년	61,605	61,605	0	0	0	
합계	7,517,869	1,879,467	1,879,467	1,879,467	1,879,467	

주) 1. 2009. 2. 23. 준공확인일 기준 사업수익률을 반영한 시설임대료 수준이며,
2. 실시협약서 제52조에 따라 조정 됨.

[별표 10]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총괄)

(단위:천원/ '05.05.25. 불변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8년	603,094	-	-	274,134	328,960	
2009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0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1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2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3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4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5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6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7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8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19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0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1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2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3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4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5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6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7년	1,315,842	328,960	328,960	328,960	328,960	
2028년	712,748	328,960	328,960	54,827	-	
합계	26,316,836	6,579,209	6,579,209	6,579,209	6,579,209	

- 주)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일정액에 본 협약 제5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
 2. 부속시설의 운영비는 제외된 금액임.
 3. 매입부가세 제외된 금액임.

[별표 10-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전북대학교)

(단위:천원/05.05.25. 불변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8년	537,960	-	-	244,527	293,433	
2009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0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1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2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3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4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5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6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7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8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19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0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1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2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3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4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5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6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7년	1,173,731	293,433	293,433	293,433	293,433	
2028년	635,771	293,433	293,433	48,905	-	
합계	23,474,618	5,868,654	5,868,654	5,868,654	5,868,654	

주)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일정액에 본 협약 제5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

2. 부속시설의 운영비는 제외된 금액임.

3. 매입부가세 제외된 금액임.

[별표 10-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전주교육대학교)

(단위:천원/ '05.05.25. 불변기준)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2008년	65,134	-	-	29,606	35,528	
2009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0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1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2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3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4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5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6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7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8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19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0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1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2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3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4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5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6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7년	142,111	35,528	35,528	35,528	35,528	
2028년	76,977	35,528	35,528	5,921	-	
합계	2,842,218	710,555	710,555	710,555	710,555	

- 주)1. 상기에서 산정된 매기 균등일정액에 본 협약 제5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
 2. 부속시설의 운영비는 제외된 금액임.
 3. 매입부가세 제외된 금액임.

[별표 11]

관리운영권의 인계

1. 본 시설 및 부속시설 일체
2.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구 및 매뉴얼 일체

[별표 12]

해지시지급금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 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 ³⁾ 로 할인한 현재가치)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 ¹⁾	C + ((D)-(C)) × 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 × 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 ²⁾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 ⁴⁾ 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국채금리]=3.82%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3.82%+0.9%
 3) 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국채금리+가산율]=3.82%+0.9%

[별표 13]

재 무 모 델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도로 첨부함.

[부록01]

성과요구 수준서

전 북 대 학 교
전주교육대학교

목 차

1. 개 요	82
2. 대상사업 시설	82
4.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84
5.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133
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138
7 성과의 점검(Monitoring)	152
8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156

<표 차례>

<표 1> 유용성 평가방법	157
<표 2> 유용성 세부 평가항목	157
<표 3> 실내 온도에 관한 평가기준(2-1)	158
<표 4> 조도에 관한 평가기준(2-2)	158
<표 5> 수질에 관한 평가기준(2-3)	158
<표 6> 청소·위생(2-4)	159
<표 7> 실내 및 옥외시설 이용가능성 평가기준(2-5)	159
<표 8>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정도 평가기준(2-6)	160
<표 9>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방법	160
<표 10>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평가기준	161
<표 11> 방재대책에 대한 평가기준	161
<표 12> 유도표지상태 평가기준(11-1)	162
<표 13> 피난경로의 조명 상태 평가기준(11-2)	162
<표 14> 비상통로상의 피난 장애물 유무 평가기준(11-3)	162
<표 15> 건축 마감에 관한 평가기준	163
<표 16> 기계설비 평가기준	164
<표 17> 전기·통신설비 평가기준	164
<표 18> 소화설비 평가기준	165
<표 19>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165
<표 20>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한 기준	166
<표 21> 이용자 관련 설문조사 세부항목	166
<표 22> 불평·불만접수 관련 평가기준	167
<표 23> 업무보고서 이행평가표	167
<표 24>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169

성과요구수준서

1. 개요

- 이 「성과요구수준서」는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BTL) 시설사업”(이하 전북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BTL) 시설사업이라 함)을 실시함에 있어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업무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임.

2. 대상사업 시설

- 사업개요 및 범위

- 전북대학교

- 건설 예정지

- A지역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학생생활관 부지내

- B지역 - 전주시 덕진구 의과대학 부지내

- ~~부지~~ 면 적 : 18,340m²(A지역-9,540m², B지역-8,800m²)

- 본 사업시설의 범위

- A. B지역 공통 :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에 관한 일체, 운영관리등

- A지역 - 공동구 연결(기존에서), 전기인입(교내 변전실에서)

- B지역 - 추모비 이전에 따른 시설보완

- . 기존 추모비 이전

○ 본 사업시설

구 분		A 지역	B 지역	계	비고
본 시설	수용인원(인)	1,800	500	2,300명 이상	비품일체포함
	기 타	관리사무실, 휴게실, 세미나실, 독서실 PC실, 체력단련실, AV실, 탁구장등			“
유지관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등			“
부 속 시 설		[별표 06] 참조			“

주) 실시설계 승인 신청시 변동 가능

- 전주교육대학교

○ 건설 예정지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대학교내

○ 부 지 면 적 : 9,055m²

○ 본 사업시설의 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에 관한 일체, 운영관리등

- 기존건물과 연결통로

○ 본 사업시설

구 분		규 모	비고
본 시설	수용인원(인)	256명이상	비품일체포함
	기 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
유지관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등	“
부 속 시 설		[별표 06] 참조	“

주) 실시설계 승인 신청시 변동 가능

4.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4.1 일반사항

- 본 조건은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설계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질적 서비스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 본 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은 제안자의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질의 사항을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통신,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지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 및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되 본 공사의 목적에 맞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및 공사 중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담은 그 원인이 발주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재 및 공법이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수자재,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설명서(기본설계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야 한다. 이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항목은 KSF1010(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 분류)에 따른다.

□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 .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 .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KS 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 규격 표시품이 없을 경우 KT, NT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 .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 . 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적용기준

-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학회)
-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건설교통부)
- . 건축관련법규(대한민국)
- .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대한건축학회)
- . 강구조 계산기준(대한건축학회)
- . 하수도 시설기준(건설교통부)
- . 상수도 시설기준(건설교통부)
- . 소방법규
- . 도로포장 설계지침(건설교통부)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건설교통부)
 -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대한전기협회제정 내선규정
 - .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 . 한국공업규격(KS)
 - . 하수도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건설교통부)
 - . 에너지절약관련법규
 - . 환경관련관계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관련법규
 -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 당해 BTL 사업에 관련한 설계지침(추가 별도협의 및 요구사항포함)
 - . 기타 당해 사업의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 등에 부여되는 관련 법규
- 사업시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설계부터 준공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설비운영 계획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을 포함한 사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준공보고서 접수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운영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재원확보를 위해 검사계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사항을 현장에 설치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 각종 현황판
 - 투시도(또는 조감도)
 - 배치도
 - 공사진도 현황

- 공사개요
- 층별 평면 및 입면도
- 공사에정 공정표
- . 벽 부착품
 - 계약상대자의 현장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연락망
 - 긴급사태시 보고체계
 - 재해대책 및 단계별 근무요령
 - 장비 및 인원현황
 - 안전대책반 편성 및 단계별 근무요령
 - 기상도표
 - 주요자재 수급 및 사용현황(관급자재포함)

. 계약도서, 공사 및 시험관계철, 관련기술도서 및 기타 감리원이 지정하는 서류

. 견본대(감리원이 지정하는 품목전시대)

4.2 건축계획

□ 배치계획

- . 전북대학교 및 전주교육대학교 종합기본계획의 기본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내용을 보완 또는 개선하여 계획할 수 있다.
- . 건물의 동 수 및 층수는 단지계획을 한 후 적절하게 계획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A지역 : 1~3개동, B지역 : 1개동으로 계획, 전주교육대학교 1개동으로 계획)
-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주변도로, 기존기숙사, 관리동 및 주차장에서의 출입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장애자의 이동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 . 건물의 출입 및 재해 등의 사고 시 장애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 기존건물 및 종합기본계획에 의하여 향후 계획예정인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 주변 환경, 지형 및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 및 부대편의시설(파고라, 벤취)을 계획한다.
- * 관련법의 한도 내에서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규모를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수용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사업신청자가 당초 제시한 총사업비의 비율로 감하여 총사업비를 적용함)

□ 평면계획

- . 생활관으로서 기숙, 행정, 식당 및 관리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구성 될 수 있도록 한다.
- . 2인용 1,150실 이상으로 A, B지역 공히 남자55%, 여자 45%의 비율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전주교육대학교 : 별도계획)
- . 각 실마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계획한다.(전주교육대학교 : 별도계획)
- . 각실 출입문은 분체도장(고급형)으로 마감하고, 디지털번호 Key system을 도입한다.
- . 휴게실, PC실, 다용도실, 식당 및 기타 편의시설을 둔다.
- . 각 실의 계획은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실별 면적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이익을 최대한 증진토록 계획한다.(단, 지역별로 연면적이 0.5%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추정총사업비를 조정한다)
- . 장애인 출입동선을 위한 장치를 계획한다.
- .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한다.
- .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
- . 남자와 여자숙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Privacy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화재등 재해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입면계획

- . Module을 적용한 입면계획을 하고 마감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마감계획 참조)
- .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현대적 균형을 고려하고 일체감을 갖도록 계획한다.

. 건물의 창호는 미관 및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 지붕은 건물전체의 미관을 고려하고,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단면계획

. 건축설비는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평면, 입면과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 동선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실별로 합리적인 단면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상·하 층간 및 실 별간 소음은 공동주택 소음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실별계획

. 숙소

- 침대, 책상, 로커 등의 비품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 모듈을 설정한다.

. 편의시설

- 방송실, 음악실, TV 및 DVD실등은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 독서실, PC실, 방송실은 방음 및 소음 흡수를 고려한다.

- 빨래방, 체육실관련실등은 소음과 진동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각 실 바닥은 용도에 따라 소음 및 미끄럼 방지등의 재질로 계획한다.

. 관리시설

- 행정실, 경비실, 사감실, 조교실(약9실), A-8, B-1:위치는 실시설계시 협의)등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한다.

. 기타시설

- 전기, 기계실

◦ 소요기기를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하며 기계의 소음이 건물의 다른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실 바닥은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보다 높게 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 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장비 반입구를 설치한다.

◦ 환기 및 채광이 용이하도록 한다.

- 화장실

- 공용화장실 설치시 장애자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 외부에 면하는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하고 외부에 면한 1층 또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실에 대하여는 방범창 및 방범필름 설치 등을 고려하여 도난에 방지한다.

- 각 동 표시판 및 각 실에 대한 호실명패 등은 본 대학에서 규정한 재질 및 규격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 기타

- . 각종 난간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 각실의 출입문에는 레버형 도어록을 적용한다.(사생실 데드락 포함)

- . 각종 PD문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제작 설치한다.

- . 신발장은 우산 수납이(빗물받이설치) 가능한 구조로 하며 천장까지 설치한다

- . 사생실은 목재 반자동림을 설치한다

□ 마감계획

- . 외부마감

부위	자재계획	비고
외벽	- 주변건물과의 조화, 현대적 감각 고려하여, 전체를 단일재료로 하는 계획은 지양(예: 콘크리트면처리, 외단열시스템)하고, - 적벽돌, AL, 불소수지판넬, 철판재, 화강석등의 재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계획한다. - 건물 1층은 실시설계시 석재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창호	- AL 115mm 단열창호(불소수지코팅2회)이상을 사용.	
유리	- 18mm 복층유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자재 및 기기를 선정해야 함.

. 주요실 마감

구분	바닥	벽	천정	비고
사생실	고급 비닐계 쉬트, 타일	고급벽지	고급벽지	커튼
홀	석재(화강석, 대리석)	석재 인테리어	고급 텍스류 인테리어	
복도	고급 비닐계 타일 - 1층 : 화강석 마감	-	고급텍스류	
계단실				
독서실	고급 비닐계 쉬트, 타일	인테리어	고급 텍스류	커튼
PC실	고급 비닐계 쉬트, 타일	인테리어	고급 텍스류	커튼
휴게실	"	"	고급텍스류 인테리어	커튼
세미나실	"	"	고급 텍스류	"
사무실 류	"	-	고급 텍스류	"

□ 실별면적표(Space Program)

. 전북대학교(41,000m²)

- A지역 : 31,928m²

참빛관

구분	실명	수용인원	실수	단위면적 (㎡)	면적 (㎡)	비고
본 시설	사생실	2	900	21	18,900	장애자실포함
	자치회실		1	50	50	
	관리사무실	2	1	50	50	사무실, 사감실
	휴게실	20	6	60	360	
	세미나실	10	2	30	60	
	독서실	100	1	200	200	
	PC실	100	1	200	200	PC제외
	체력단련실		1	400	400	
	AV실		2	30	60	
부속시설	공동세탁실		2	50	100	
	식당. 주방	2,000	1	1,500	1,500	시간당 수용인원 임
	편의점		1	200	200	
유지관리	전기실		1	150	150	
	기계실		1	500	500	
	발전기실		1	50	50	
전용면적				22,780		
공유면적				9,148		
총 면 적				31,928		

- B지역 : 9,072m² *계/민관*

구분	실명	수용인원	실수	단위면적 (㎡)	면적 (㎡)	비고
본 시설	사생실	2	250	21	5,250	장애자실 포함
	자치회실		1	30	30	
	관리사무실		1	50	50	사무실, 사감실
	휴게실	20	2	60	120	
	세미나실	10	1	30	30	
	독서실	100	1	200	200	
	PC실	50	1	100	100	
	탁구장			150	150	
	AV실		1	30	30	
부속시설	공동세탁실		1	50	50	
	편의점		1	50	50	
유지관리	전기실		1	90	90	
	기계실		1	300	300	
	발전기실		1	30	30	
전용면적					6,480	
공유면적					2,592	
총 면적					9,072	

전주교육대학교(4,454㎡)

(단위 : ㎡)

층별	실명	수용인원	단위면적(A)	실수(B)	면적(C=A*B)	용도
1층	침실	1	30	3	90	
	침실	2	15	8	120	학생침실
	매점	1	43.2	1	43.2	수익사업
	식당		246	1	246	수익사업
	휴게실		43.2	1	43.2	
	다림질실		21.6	1	21.6	
	1층 계				564	
2층	침실	2	15	35	525	
	휴게실		43.2	1	43.2	
	2층 계				568.2	
3층	침실	2	15	35	525	
	휴게실		43.2	1	43.2	
	3층 계				568.2	
4층	침실	2	15	35	525	
	휴게실		43.2	1	43.2	
	4층 계				568.2	
5층	침실	2	15	15	225	
	휴게실		43.2	1	43.2	
	체력단련실			1	156	
	5층 계				424.2	
	면적소계(Net)				2,692.8	
	공유면적				1,761.2	
	합 계(Gross)				4,454	

*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등은 공동사용으로 계획

□ 주요실 비품사양

구분	구분	비품명	수량 (기준)	규격	재질	비고
본 시설	사생실 (2인/1실)	침대	2	제안서 제출시 수량, 규격,		
		책상	2	재질등 제시		
		의자	2	"		
		책꽂이	2	"		
		로커	2	"		
		신발장	1	"		
				"		
	관리실 사무실	사무용 책상, 의자 소파, 탁자등 일체		"		
	휴게실	TV, 휴게용 의자 탁자등 일체		"		
	독서실	독서용 책상(칸막이형), 의자등		"		
	세미나실	회의용 탁자, 의자, 철판, 스크린등 일체		"		
	PC실	책상, 의자등 일체		"		
	체력단련	권련기계, 비품 일체		"		
부속 시설	주방. 식당	관련기계, 비품 일체				
	매점	"		"		
	세탁방	"		"		
유지 관리 시설	전기실등	"	"			

* 위 비품 및 기타실에 대한 규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단, 정확한 수량등은 협약시 정함.)

4.3 건축구조계획

□ 관계법규 준수

건축구조에 관한 법규, 기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 구조계획

- . 구조방식에 구조계획상의 특기사항, 선정사유, 골조 배치계획, 지하 부분 및 기초구조의 선정, 기타사항 등으로 표기한다.
- . 구조 평면 및 입면 계획도(약도)를 작성토록 한다.

□ 구조설계

- . 적용기준은 건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극한 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강구조 설계기준, 기타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 주요 구조부의 구성재료

- ①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의 재질은 KS규정에 명시된 강도를 사용한다.
- ② 콘크리트 : $F_{ck} = 240\text{kgf/cm}^2$ 이상
- ③ 철근 : KSD 3504에 규정된 종류(압접 여부에 따라 철근을 지정한다)
- ④ 형강재 : KSD3503, KSD3515에 규정된 종류

. 구조해석

- ① 구조해석용 Program은 신뢰성 있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사용한 프로그램 명시)
- ② 수직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에는 실용구조 해석법(예: Sub Frame 해석용 Program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적재하중의 부분재하는 필히 고려하도록 한다.
- ③ 입력 Data는 구조해석 Model 약도와 같이 제시해야 하고, 출력Data는 부재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 ④ 특수한 구조의 경우는 동일용도 및 규모에 갈음되는 시공사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⑤ 내진 및 내풍구조 해석시 등가정적해석과 동적해석을 병행하여 비교하며, 이때 응답 스펙트럼은 UBC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 구조부재 설계

- ① Program을 사용하여 부재단면을 설계할 경우 출력 Format은 산정 과

정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 ② 각 부재의 단면 산정결과는 배근 약도 등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 ③ 철근콘크리트의 이음 접합부는 부재설계결과에 따라 이음 및 접합 상세를 제시한다.

· 구조계산서 작성요령

- 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제3자가 구조계산서를 검토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 ② 구조계산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산정과정과 결과 및 배근 등 구조약도를 명시하도록 표기한다.

③ 구조계산서 작성순서

- 일반사항
- 공사명칭
- 건물용도
- 구조개요
-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 구조형식(System)
- 구조재료의 규격 및 강도
- 바닥도
- 설계하중 산정
- 구조해석 : 설계하중에 의한 응력해석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조합 응력)
- 단면계산 : 슬래브, 보, 기둥, 내력벽, 기초 및 기타
- 이음 접합부 계산 : 기둥, 보와보, 큰보와 작은보, 기둥-보 접합부, 기타(상세 제시)

· 구조도면

구조도면에는 건축구조 기술사가 확인 날인하도록 한다.

4.4 토목계획

□ 일반사항

- 토목설계는 지역의 지반조건을 상세히 파악해서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교육시설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지 정지 공사, 구조물(공동구, 옹벽, 포장, 오·우수,

기타 부대공사(조경, 휴게공간 등)공사를 포함한다.

- . 토목설계는 관련법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세부조성계획 등에 의한 인·허가 협의에 문제가 없이 계획하여야 한다.
- . 토목설계는 관련된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접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 지반조사, 건물, 토목구조물, 지중매설관로, 설비 등의 기초 설계, 굴삭면 안정처리 등에 관하여는 본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 제정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른다

□ 기초설계기준

. 지반조사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외에 부지에 대한 지형 및 지질이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획을 한다.
- 지반조사, 토질분석 및 대책, 기초설계검토, 굴착·사면 안정처리, 연약지반처리 등 토질관련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 조사의 방법 개소는 조사목적, 지반의 상황, 건물 등의 배치상태에 따라 설계에 필요한 토질 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부지의 여건상 직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답사, 주변건물의 기초 시공자료 등 간접조사에 의해 설계하고, 설계확정 전에 직접조사를 시행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 토질분석 및 대책

- 설계에 적용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결과 및 각종 토질시험 등의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결정한다.
- 지반 침하 등으로 철근코크리트 및 흙 구조물 등에 변형거동이 예상되는 연약지반은 그 역학적 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지반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 기초설계검토

- 건물의 지하부분, 지하관로 등의 매설물, 옹벽 등 토목구조물의 상호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지중구조물의 상·관 단면도를 작성한다.
- 지반조사 및 지반조건의 특수성, 지반의 변화특성, 조사자료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건축, 토목, 설비의 각 시설물 별로 지반조건 및 기초구조를 검토한다.

- 설계허용지지력, 지반의 변화상태 및 인접구조물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건물 등의 해당 책임기술자가 기초형식, 기초공법 및 가설 흙막이 설치여부를 협의 결정한다.

· 굴착 및 사면안정처리 검토

- 구조물 공사를 위한 굴착계획을 작성하고 굴착사면안정 및 가설 흙막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 가설 흙막이 공사 및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 부지경계에 조성되는 사면(구조물설치를 위한 절취 포함)에 지반활동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면안정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 굴착 시 암반 발파가 필요한 경우 주변 건물 등을 고려하여 제어발파 및 무진동발파공법을 병용하여 계획한다.

· 연약지반처리 검토

- 재하에 따른 침하가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약지반은 지반개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설계에 포함한다.
- 연약지반처리 공법은 지반조건, 시설물 종류, 공종별 사업추진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경제적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 연약지반처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설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 연약지반 처리 전 확인 보링공을 설치하여 지반처리 과정 및 종료시 확인할 수 있는 토질시험을 실시한다.

□ 일반설계기준

· 부지정지 계획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의 지형 및 시설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 지형 및 지물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전체적인 조화가 되도록 한다.
- 부지정지 시 표면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탄한 구배로 계획한다.
- 토공량의 균형유지로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잔토가 발생하면 교내에 활용 가능한 량을 우선 수용하고 수용이 불가능 할 경우 교외로 배출하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사토장은 가장 경제적인

지역으로 선정한다.

- 정지공사 이전에 비옥한 표토층을 확보하여 조경공사 시 조경용 토양으로 사용토록 계획한다.
- 부지정지로 발생하는 사면은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녹화시킨다.
- 성토비탈면구배는 1: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조경석 쌓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부지조성 공사시 고저차로 인한 부득이 옹벽 등 토목구물을 설치할 경우는 되도록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계획한다.
- 건물신축으로 인한 주차대수를 추정하여 최대한 확보하고 부지내 및 주변 지자체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본교의 부지중 A지역은 사유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착공 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배수계획

- 오수와 우수를 별도 분류하여 기존관로에 연결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오·우수의 시설형식은 상·하수도 시설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오수 정화시설은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오수 정화시설은 관련 규정에 적합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오수계획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가능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 생활하수(발코니 배수관 포함)는 분리 차집하여 중수도 시설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중수도 계획이 있는 경우)
-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 부지 내 강우강도는 30년 빈도를 적용한다.
- 하수관의 유속은 0.8 ~ 3.0m/sec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 오·우수관은 고무링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이나 그 이상의 재질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평가한 후 최적의 관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 맨홀 설치 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D250mm 이상의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부지 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성토부, 연약지반 및 기타 구조상 필요할 경우에는 오·우수관에 관 기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암반부위에 매설되는 관로는 관의 주위를 양질의 토사로 잘 다져 넣어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동장 조성지역은 기반조성 및 배수계획을 하여야 한다.
- 본교 관로의 말단 방류구는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및 오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야 하나 관로부설을 위하여 시에 관리하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도로굴착허가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계획 하여야 한다.

. 상수도계획

- 급수관 설계에 사용하는 계획 급수량은 평상시는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시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과 소화용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 수도관 재질은 닥타일주철관(내부시멘트라이닝) 이상의 재질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평가한 후 최적의 관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 급수관 인입 분기점에는 계수변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 및 규격은 스테인리스 20kg/cm² 이상으로 하며 관리를 위한 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 포장계획

- 포장 설계방법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및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포장 총 두께는 동결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포장 재료는 내마모성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보수가 쉬운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보도블럭은 점토블럭, 소형고압블럭, 투수콘등의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경계석은 화강석(보차 도경계석 200×250~250×300, 도로경계석 120×150~150×150)으로 한다.
- L형 측구의 순폭은 500mm로 설계하며,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부분과 건물 출입구는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평면 또는 부족시 입체로 설계하고 횡단구배가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부지내의 보도 및 옥외계단 설치 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점자블록, 유도블럭, 램프, 낮춤석, 장애인주차장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보고서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차선 및 주차장 도색은 음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도로에는 보행자, 자전거 및 자동차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적절히 계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공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강도설계법 으로 한다.
-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곳은 가능한 친환경공법(조경석 쌓기, 산석 쌓기, 기타공법등)으로 하고 불가피할 시는 현지여건, 지반조건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옹벽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옹벽 설계 시는 전면을 무늬형 옹벽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정밀분석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관할청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옹벽 전면에는 9m 이내마다 수축이음을 두고 30m 이내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파이프 D60~100mm)을 수평방향으로 4.5m이하, 연직방향으로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지표면에서 300mm 위에 설치하고, 300~400mm 폭으로 뒷채움(괘잡석,또는 조약돌)을 하

여 배수가 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구조물은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구계획

- 기존 건물 공동구와 연결토록 계획하고,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 공동구 노선을 결정한다.
- 신축건물이 2개동 이상일 경우 동간 공동구를 연결하고 소방 및 방범용문을 설치 한다.
- 공동구 크기는 설비 및 전기등과 협조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동구를 분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기구를 설치하고 환기를 위한 환기구(급. 배기)를 설계한다.
- 공동구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서는 아니 되며, 시공 이음부에는 침하방지를 위한 턱을 고려하고 지수판을 설치한다.
- 공동구의 방수는 내부방수를 원칙으로 하고 검증된 방수공법을 적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공동구 내부 바닥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로 설치하고 바닥은 배수로 쪽으로 횡단구배(2%내외)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공동구 관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구는 제반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동구 연장 30~50m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며, 신축이음 부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4.5 조경계획

□ 일반사항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규, 기준, 조례, 지침 등 제반관련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조경면적은 법정조경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본 설계와 관련된 타 분야의 설계(건축, 토목, 전기 등)를 검토하여 기능 확

보 및 미관 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기본방향

- . 단지 조경은 단지환경의 푸르름을 조성·유지하며, 부지 주변의 자연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모범적인 주거 환경조성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 녹지공간을 체계화하여 주변의 자연녹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건축물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경사면을 계단형 화단이나, 잔디로 피복하여 녹화토록 한다.
- . 단지 전체를 하나의 질서 있는 체계로 구성하여 단조롭고 기계적인 공간구성을 지양한다.
- . 각 구역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갖도록 특화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간들이 일관된 체계에 의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공간들을 통일성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 . 운동장 및 휴게공간에는 운동시설, 개방형 임시주차장등을 계획한다.

□ 식재계획

- . 식재설계는 토양환경과 기후등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하고 생태적 배식은 수목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공간별로 이용형태와 기능에 적합한 식재패턴을 도입하고,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 주목은 각 주요공간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나무자체의 개성이 중시되는 교목류를 선정한다.
- . 부목은 부지내의 조경의 계절적 변화감과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목, 관목류를 선정한다.
- . 종목은 조경공간의 식재 기반형성을 담당할 수 있는 관목류, 초화류를 선정한다.
- . 식재지반은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토심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공토양을 사용한다.
- . 대경 목은 본당 0.5m³이상 부토 마운딩을 조성한 후 식재한다.
- . 시각적 주요지점에 대형목 및 화목류 등을 식재한다.
 - 교목은 대목 및 대형목을 주로 사용하고 수종은 우리고유 수목을 위주로 지역과 기후등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상록수와 낙엽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 . 소음이 예상되는 건물 전면과 측면 도로변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 . 가각녹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식재한다.
- . 북측 녹지와 건물 내의 조경은 일조량을 감안하여 내음성 수종을 식재한다.
- . 주차장 주변은 매연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 . 공동구, 맨홀, 옥외 전기·기계설비 등의 위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 . 토목공사에서 발생한 표토를 재활용하여야 한다.

□ 암반 및 토사절개지 녹화 계획

- . 부지의 지형 및 지질을 고려하여 암반이나 토사절개지에 대한 사면안정 및 녹화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종을 계획한다.
- . 암반절개지에는 비탈면 식생토 등을 이용하고 관목이나 지피식물 만경류 등을 선정한다.
- . 비탈면 토사절개지에는 적절한 교목과 관목 그리고 여러 가지 녹화 식물을 선택한다.

□ 이식

사업부지 내 위치한 조경 수목은 교내에 이식하여야 하며 이식 장소는 이식 작업 시 지정 한다, 단 잡목등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제거하고 잔재물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

- . 환경조형물을 입구 또는 주요지점에 설치한다.
- .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보행 결절점이나 이용도가 많은 곳에 적절히 배치한다.
- . 시설물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배치방법을 강구하여 인접 시설물이나 구조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 . 재료는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으며 규격화된 KS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파고라가 발코니 전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 . 휴지통은 내구성이 강하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거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 .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존 연계하여야 한다.

- . 포장구간의 폭은 포장 재료의 단위치수로 계획하여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 운동시설 주변에는 보행 휴게 공간 및 녹지를 배치한다.
- . 운동시설 주변은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 교통계획

진·출입도로 및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종합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보완사항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자체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4.6 환경생태계획

□ 설계시 유의사항

- .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권장한다.
-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 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의 제반규정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 .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시방서)에 그 적용 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데이터 등 적용 부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본방향

친환경 패러다임 시대에 걸 맞는 친환경 건축과 기존 기숙사의 획일화된 건축에서 탈피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념을 도입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모델의 기숙사 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연구단지 건립을 목표로 하고 Green Building 인증수준 이상으로 설계하고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기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자연, 건축, 인간, 기술이 하나가 되는 생활관 환경을 제시한다.
- 기존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계획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시한다.

.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기법의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방안을 적절히 도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 선정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유효이용과 자연 에너지 도입을 적절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환경오염의 방지와 생태환경의 복원

- 주변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등)요소로부터 캠퍼스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 방안을 제시한다.
- 대지의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해 생태환경(수공간,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의 복원 혹은 조성을 수립한다.

□ 생태적 토지이용 계획수립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래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
-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지역 냉·난방, 하수처리장 등)
- 지역 기후의 특성(태풍의 영향 지역, 하천범람 지역 등)
- 대지의 수자원적인 특징(빗물, 자연수, 하천수의 이용 가능성)
- 대지의 자연생태학적 가치(표토 재활용)
- 지표면과 지하면의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태계 특성

·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대지 내의 자연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지의 수리적 특성, 식생, 수림, 수변지역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하여 작성한다.
-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를 최적화한다.
- 야생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물 서식지 및 자연 수종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한다.
-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형과 조화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한다.
- 빗물의 토양침투 및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지 내의 투수성 포장 면적을 확대시킨다.
- 각종 개발과 대지활용에 있어 모든 시설은 생태계, 경관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

· 환경오염저감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단지 내 녹도,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

로 등을 연계하는 그린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옥상, 옹벽, 사면) 등을 조화롭게 하는 녹화방법으로 계획한다.
- . 지상주차장 둘레, 도로변, 산책로변 등은 투수성포장으로 계획한다.
- . 부지정지시 발생하는 토지표층을 재활용하여 생물서식공간 구성에 사용하고, 개발 시 희귀 동식물이 발견 시에는 한곳을 정하여 이식한 후 수생 및 육생비오톱 구성에 적용하여야 한다.
- . 체력단련을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야외 체육시설을 계획토록 한다.
- . 생활관 단지 내부에 휴식공간, 만남의 광장, 쉼터 등의 공간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옥상녹화 조성

- 옥상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휴게공간, 생물서식공간으로 계획하고, 옥상으로부터 전도되는 열 차단, 소음경감, 방풍, 수질대기정화, 경관향상, 건물내구성 향상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옥상녹화(생물서식공간, 휴게공간 등)를 검토하고, 캠퍼스 녹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도록 한다.
- 옥상녹화 기법중 경량형, 관리 중량형에 필요한 건물설계하중을 고려하고 신공법인 Green roof system으로 설계한다.
- 옥상의 일정공간에 친수공간,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 옥상식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초화류, 관목류, 교목류 등의 다양한 식물소재를 이용한다.
 - 계절별로 개화하는 식물을 선정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종합적인 물 순환시스템 계획

캠퍼스 부지내의 수자원 빗물(우수), 지하수, 시상수, 하천수와 중수도시설에서 생산되는 중수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선정하여 최대한 물재활용시설을 확보하는 종합적인 물 순환 시스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수 재활용

- 빗물 활용은 강우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재활

용함으로써 상수의 소비절감 및 우수 유출억제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빗물 재활용시설을 계획한다.

· 지하수 유효 이용

- 지하수 개발 이용은 본교의 용수특성을 감안하여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 및 중수활용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수 사용은 우선 일정기간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공정용수, 친수공간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검정과정(수질, 수량, 수위 :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건, 위생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후 음용수로 전환사용이 가능하도록 배관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단, 시상수의 단수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150톤/일(B지역:50톤이상) 규모의 음용수용으로 준공 시 완료)
- 지하수 공급은 상수도 공급계통과 별도로 독립된 공급계통(화장실, 청소용수, 공정용수 등)을 분리하여 공급토록 계획한다.
- 지하수 출수장치, 유량계 및 압력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채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 사용량 검침은 원격검침(무인검침)이 가능토록 시설하여야 한다.
- 지름 25mm 이상의 수위 측정 관을 설치하여 항시 지하수 수위를 자동 계측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수를 개발 시는 지하수법을 준용하고, 사전에 관계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허가서류(지하수영향조사서 등 포함) 및 비용일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중수도 시설(권장사항)

- 중수도 용수원은 우수, 하천수, 생활오수 등 한정한다.
- 중수도시설의 정수공법은 생물학처리법, 물리·화학적처리법, 한외여과막법중 건물의 조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하수, 우수처리시설과 상호 병행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친환경 시설물 계획

· 친환경 포장

- 포장은 가능한 상징성 패턴과, 색상의 변화감으로 다양성 창출하는 기법으로 계획한다.
- 재료의 색상은 건물과의 일체감,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각 시설별 친환경포장공법은 녹도, 잔디블럭, 점토블럭, 칼라투수콘, 흙시멘트, 마사토 포장으로 주변 환경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실내 주거환경 계획

. 적용기준

실내 주거환경 적용기준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를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쾌적성의 향상

- 거주자의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평면설계 및 창외 효과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주간인 인공조명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실내 주거환경

-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실내공기의 질(IAQ)을 높이기 위해서는 습기 침투 및 정체, 재료나 제품으로부터의 유해 또는 독성가스의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건축물의 부위는 재료가 복합재이기 때문에 개별 자재의 성능보다는 부위별 종합 성능을 근거로 계획한다.
 - 효율적인 제어시스템 장치를 계획한다.
 - 자연요소를 도입하여 실내 공기의 자연 정화작용을 도모한다.
- 연구 및 교육환경은 연구자 및 학생의 건강, 쾌적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적정수준의 조명기준 초도이상의 조도레벨 유지(KSA3011참조)
 - 적정소음 기준이하로 유지
 - 잠재적 사고위험에 대처
 - 유해전자파 억제
-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
 -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환경부하가 적은 건축재료 사용을 고려하고,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유도한다.
 - 건축자재의 선정은 내구성, 오염물질 발생도, 내재 에너지량, 재활용성, 재활용 자재의 함유도 및 기타 환경 부하가 작은 생산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친

환경적 자재를 선정한다.

- 건축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유리블록 사용 시 재생유리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 유해 유기화합물(VOCs)과 화학물질 함유자재(예: 내장재, 마감재, 접착제, 도료 등)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 설비 계획

·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위설정은 부지전반에 걸친 차양설치와 동서향 방위를 통해서 냉방부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공간기능을 부지 및 태양방위와 조화시키고, 여름철 미풍에 의한 통풍을 자연환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 하절기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 동, 서쪽 면에 위치하는 경우 창호 외부에 차양시설을 한다.
-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수직창, 광선반, 클리어스토리(고창)·모니터 창 및 건물형태의 이용을 통해서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한다.
- 벽, 지붕, 창호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교영향을 최소화 하고, 외부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하여야 한다.
- 태양열을 기하학적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내부에 대한 태양열의 취득은 난방장치, 냉각장치에 이익 되게 타당한 외형설계를 고려한다.
- 일광, 난방장치 및 환기장치를 고려하여 외형에서 문, 창문 및 통기 구멍들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한다.
- 하절기와 동절기의 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로 계획한다.

□ 우수처리시설 계획

- 우수처리는 각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 오수처리 계획은 다음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구역은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분류식 관거가 부설되지 않는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하수종말처리구역 지정이 아닌 지역(합류식관거지역)은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고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처리효율 및 방류수 배출농도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방류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으로 각 대학의 지역(수변구역, 특정지역, 기타지역)에 속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기준으로 한다.
 - 건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오수발생량 기준은 200L/인으로 계획한다.

□ 기타사항

- . 학교시설물 설치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학교수업을 방해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처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주방 음식쓰레기,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동선과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토사항 제출 목록

환경친화형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분야 등에 대한 아래의 세부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 야	세 부 항 목
○ 토지이용 및 교통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용적률,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거리, 단지내 자전거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 단지내 음환경,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에너지 소비량, 환경친화제품의 사용, 환경친화적 공법 및 신기술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중수/우수이용, 중수/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 운영/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정보통신 및 첨단 설비계획
○ 생태환경	○ 표토 재활용을,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 여부, 녹지공간율, 연계된 녹지축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옥상녹화 조성
○ 실내환경	○ 휘발성 유기물질 저 방출자재의 사용, 자연환기 설계의 정도, 각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채택, 차음성능 수준, 진동설계 기준
○ 기타사항	○ 단지내 음환경, 대체에너지 이용, 중수도 설치, 기존 자연자원 보전을

4.7 기계설비계획

□ 일반사항

· 설계유의사항

-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 입찰안내서와 건교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설계지침서, 표준상세도 등을 최소한의 설계조건으로 하고, 이와 동등이상으로 설계한다.
- 건축, 토목,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고효율의 자재선정과 신공법을 설계에 고려한다.

· 설계 기본방향

- 친환경적인 설비계획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에너지(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
- LCC(Life Cycle Cost)개념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 . 초기투자비,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계획
- . 기기와 장비의 집중화 및 시스템의 단순화
- . 최대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자재와 장비선정
- .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스템 채택
- 추후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와 안전성 확보
- 신기술 도입과 환경친화적인 설비계획 및 설계
- 합리적인 열원선정, 냉·난방방식 선정, 급수·급탕방식 계획
- . 온·습도 설계기준
 - 실외 온·습도 조건

구 분	건구온도(°CDB)	건구온도(%RH)	비 고
하절기	31.9	76	전주기준 위험율 2.5%
동절기	-8.5	76	

- 실내 온·습도 조건

구 분	여 름		겨 울		비 고
	건구온도	상대습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냉·난방	26	50	20	50	

□ 설계범위

아래 각 공정에 대한 주요장비의 용량산출서, 규격서(규격, 성능, 제조회사 등), 신기술 혹은 주요시공법, 타 공법과의 경제성(LCC)비교, 예정공사금액 등을 산출한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서와 각 설계기준에서 별도로 제시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열원설비
- . 냉·난방설비
- . 위생(급수, 급탕, 배수, 오수, 통기)설비
- . 환기설비
- . 소화설비

- . 공조설비
- . 식당 및 주방설비
- . 도시가스설비
- . 자동제어설비 등

□ 세부설계지침

. 열원설비

- 건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장효율적인 열원으로 선정 계획한다.
- 열원설비는 부하변동에 따른 대수제어가 가능토록하고 동력설비 등은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 등 에너지절감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기계설비 종합운전계획(TAB)을 계획하고 적법한 업체를 선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및 시공에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 시 TAB결과서를 제출한다.
-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냉난방설비

- 난방공급은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 중앙공급식과 개별공급(세대별 가스보일러등)방식을 검토하되 각 실별로 밸브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토록 한다.
- 냉방공급을 사용자 선택사용으로 계획할 경우 개별제어와 중앙제어가 가능한 냉방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관리비 산정에 편리한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시스템을 구성토록 계획한다.
- 공용시설(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게스트룸 등)에는 가능한 개별 냉난방시스템을 고려한다(EHP, GHP등)

. 위생(급수, 급탕, 배수, 오수, 통기)설비

- 용수원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상수도, 지하수, 중수도시설에서 확보하고, 급수방식은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가압펌프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선정하되, 음용수 공급은 시상수를 정수하는 중앙공급식 정수시설, 또는 층별 일정간격에 정수기를 배치하여 공급토록 한다.
- 주 수도계량기는 기계실에 설치하고 세대별 급수, 급탕계량기는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관리(검침, 요금부과 등)가 용이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세대별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급탕방식은 세대별 가스보일러를 이용하며, 공용시설(식당, 라운지점 접견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은 중앙공급 방식으로 한다.
- 모든 급수, 급탕관에는 보온시공을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은 방로보온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세대별 급수, 급탕배관이 상향식일때는 배관에 Water Hammer Arrester를 설치한다.
- 배수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여 외기와 접하도록 하며,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Vent Cowl을 설치한다.
- 오수, 배수와 입반잡배수의 배관에는 적정개소에 소제구를 두어 필요시 소제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기설비

- 생활관 숙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기계실, 전기실, 밧테리실, 화장실, 주방, 기타 부속시설 등은 용도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환기방식은 1종 및 3종 환기방식을 선별하여 계획한다.
- 환기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Fire Damper를 설치한다.
-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 설치에 관한 법규를 검토하여 적당한 환기시설을 한다.

. 소화설비

-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에 감지, 진화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소방감리가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소화설비 설치대상물은 소방법규에 의하여 설치 계획토록 한다.
-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비용량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소의 설비는 안전하고 완벽한 소화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

계에 반영한다.

· 식당 및 주방설비

- 급·배수, 급탕, 도시가스시설, 급·배기시설, 냉·난방 및 공조시설을 식당과 주방에 적합한 설비로 구성한다.
-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은 별도의 설비로 구비하고 급수·급탕, 도시가스는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설치한다.
- 식당 내부는 타 용도(각종 행사)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식당은 전체 수용인원이 1시간 이내에 2교대로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급식이 가능한 주방시설 및 가구, 부속시설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식당의 메뉴는 한식으로 하고 간단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식당의 배식은 뷔페식, 또는 셀프서비스로 계획한다.
- 주방에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동시설과 기구 등을 갖추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로 능률적이고 쾌적하며 청결한 작업환경을 창출하도록 한다.
- 주방운영과 관련한 영양사실, 근무자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공산품창고, 음식 재료창고, 전처리실, 저온창고 및 냉동창고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 잔반처리 등은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잔반 및 유자세제류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 모든 주방시설은 식품위생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가스설비

- 가스설비의 설계 및 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반가스 공급규정, 관련법규 및 한국가스공사 시공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가스사업자(가스공급자)와 협의 후 설계하고 가스공급 회사의 가스공급 동의를 받아야 한다.(설계 협의서 및 공급동의서 제출)
- 가스안전공사에 사전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 각 세대 원격검침용 가스미터기를 설치하여 요금징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자동제어설비(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각종 제어(온도, 습도, 압력, 경보, 상태, 장비의 ON-OFF 등), 감시시스템(기계, 전기, 가스, 소방, 보안, 승강기 등), 자동검침(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경보 및 방재시스템 등은 중앙감시실(통합방재실)에 집중 설치하고 24시간 근무자를 배치하여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스템선정(제어, 통제방식 및 제조회사)시 타 시스템과 비교표(성능, 특징, 호환 및 확장성,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보관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이관한다.
- 각종 장비를 대상으로 온도, 습도, 압력, 감시, 경보, 상태, 장비의 ON-OFF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및 체계적인 원격제어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이용, 종합관리토록 한다.
- 중앙감시시스템과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의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DDC방식을 채택하며, 기존 학교 시설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제어 및 감시는 통합방재실내에 설치되는 중앙감시반에서 수행하고 현장(냉.온열원설비, 공조기, 환기설비, 각종 온.습도제어, 압력제어, 유량제어)에서도 자동 및 수동 조작이 되도록 구성한다.

·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배관종류	재 질	비 고
시수·정수관	스테인레스관(KSD3576, STS304)	
급탕·환탕관	스테인레스관(KSD3576, STS304)	
오·배수관	저소음형 PVC관	
통 기 관	PVC관 VG1	
소 화 관	백강관(KSD3507)	
증 기 관	흑강관(KSD3507)	
가 스 관	백강관(KSD3507)	실내
	폴리에틸렌피복강관(KSD3589)	매설

4.8 전기설비계획

본 설계수준은 기숙사 신축에 따른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
한 지침으로 사업시행자는 본 지침 및 관련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통
일된 표준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일반사항

-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적 사고의 사전 예방 및 계통과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우선
적용하며, 고효율 기기를 이용하여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의 시스템을 수용하여 유지관리상 호환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 기숙사 신축에 따른 부하설비용량을 감안하여 MAIN 변전설비의 용량과 고압
간선계획을 세워 설계에 반영한다.(의대캠퍼스 및 본부 캠퍼스)

□ 과업의 범위

아래 각 공정에 대한 주요장비의 용량산출서, 규격서(규격, 성능, 제조회사 등),
신기술 혹은 주요시공법, 타 공법과의 경제성(LCC)비교, 예정공사금액 등을 산
출한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서와 각 설계기준에서 별도로 제시한 내용의 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원설비(수전설비, 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등)
- 전력공급설비(옥외 전력간선설비, 옥내 전력간선설비 등)
- 전력부하설비(동력설비, 조명설비, 전열설비)
- 접지 및 피뢰침 설비
- 자동제어설비
-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등)
- 방범설비
- 엘리베이터 설비

□ 적용법규 및 기준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전기설비기술기준
- . 한전공급규정, 내선규정
-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교육부 학교시설공사 설계지침.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승강기관련법규

□ 설계기준

- . 전원설비 계획
 - 수전설비는 내선규정에 의한 정식 수전설비를 원칙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수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중앙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저압 배전반 및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10%이상 예비 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 신축건물에 필요한 전원인출은 각 대학에서 지정한 주변전실 고압반에서 인출하도록 계획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수배전시설 및 고압간선을 포함한다.
 - 변압기뱅크구성은 세대용(전등, 전열용)과 공용부하용(동력부하 등) 변압기뱅크를 별도로 구성한다.
 - 변압기는 고효율인증 변압기를 계획하고, 소음 방지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변압기 용량 산정은 실부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내선규정에 의한 표준부하 산정값 이상으로 한다.
 - 특고압 및 고압차단기는 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의 제품이어야 하고 인출이 가능한 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전력 배전에는 분기회로마다 분기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는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등의 관계법규에 의한 비상전원, 정전, 화재시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 용량산정은 각 법규정에서 정한 용량의 합과 비상시 주요시설(난방, 급수, 식당 및 주방 등)을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하여 설비의 사용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용량을 산정하며, 부하의 기동용량 및 순시전압 강하 등에 따른 부하용량을 산정 계획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의 기초대는 발전기 중량과 진동에 적절한 방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다른실에 전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 부근에 연료탱크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에는 엔진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량이 흡입될 수 있도록 급, 배기 개구부를 계획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는 저소음형을 사용하며 발전기실 내부에 흡음시설을 설치하고, 냉각팬 공기 출구는 소음챔버, 소음앨보, 엔진배기관에는 소음기 등을 부착하여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차단토록하며, 발전기 규격서(규격, 성능, 제조회사 등), 용량산정서 및 소음차단계획서, 소요예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축전지설비는 보수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로 큐비클에 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하여 전체 사용전력, 단위세대 사용전력, 공용부분 사용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전력량계를 취부한다.

전력공급설비 계획

- 일반사항

- 간선설비는 허용전류, 허용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예비 여유율, 고조파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저압간선은 관련 법규에 맞는 케이블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저압용의 각종 개폐기, 차단기류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옥내입상 간선계통은 유지 관리와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계획 한다.

- 간선의 규격산정은 추후 부하증설 등에 대비, 여유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배전방식은 아래 방식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 변전실에서 각 층별 분전함 : 3상 4선, 380/220V
 - 층별 분전함에서 세대별 분전함 : 1상 2선, 220V
-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중관로, 건물 내 EPS 를 이용, 관계 법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케이블로 배선하며 유도장애, 기타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방호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변압기 1차측 VCB와 변압기간에는 부스바 또는 고압케이블 사용하고, 변압기 2차측과 저압배전반 간의 간선은 저압케이블을 사용한다.
- 배선경로는 유지관리에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세대별로 중앙에서 전기 사용량을 검침, 사용요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분전반

- 층별 분전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 실내에 계획 한다.
- 분전반의 재질은 EPS 실내에 설치할 경우 철재로 하고, 기타 실내에 노출의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로 계획한다.
- 분전반은 이중도어 타입으로 설계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한다.
- 분전반내 분기회로 차단기는 10% 이상의 예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하나의 분전반에는 사용전압이 다른 간선회로를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전반내 인입, 인출구에는 예비 회로 수용 및 변경에 대비하여 공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EPS 시설

- 건축물의 상층, 하층의 입상 입하 관계가 좋은 부하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EPS실내 분전반 배치는 보수공간을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EPS는 전력용 과 통신, 소방, 방송용으로 분리하여 시설하고,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크기는 장비를 인·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배관공사
 - 내선규정에 정하는 배관공사 시설기준 이상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사용전선관
 - 강제전선관(아연도) : 천정속 은폐, 노출배관 및 외부압력과 기계적 충격이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
 - 합성수지전선관 :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벽체매입배관 및 강제전선관의 외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며, 외부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이 없는 장소에 사용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지하매입
 - 가요전선관 : 이중천정내 매입박스외 기구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는 제1종, 조인트박스외 전동기 연결 등 동력 배선시에는 제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
 - 전선관의 부속류는 동일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 슬라브내 매입하는 경우 배관 굵기는 28mm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배관 및 배선시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이 아닌 부분을 관통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강(밀폐)을 계획하여야 한다.
 - 지중매설 배관시 모래다짐을 충분히 실시하고 경고테이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의 최상층 슬라브배관은 이중천정속 노출 배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
 - 전선 및 케이블 설치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에 설치되는 간선 및 케이블은 난연케이블을 사용하고, 소방법상 내화성이 요구되는 배선은 FR-8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50mm²이상의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최소규격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전선 굵기의 기초가 되는 허용전류는 내선규정을 적용하고, 케이블 랙(RACK) 또는 트레이(TRAY)에 의한 다수의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는 내선규정의 허용전류 저감율을 적용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구
 - 건물 신축에 따른 공동구 구내설비는 가능한 기존 건축물 공동구에서 인출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구 전등, 전열 전원은 기존 회로와 일괄조정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는 강전용과 약전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 트레이와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전력부하설비 계획

⑨ - 조명설비

◦ 조도는 KSA 3011의 조도 기준에 준하며 적정한 설계를 위하여 명확한 조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명용 전구, 기구재질 및 부속자재에 관한 기본사항은 KS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구재질 및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하여야 한다.
- 반사값은 고조도 반사값을 사용하며, 눈부심이 적은 방식을 계획 선정하도록 한다.
- 공용부(계단, 통로, 옥외 등)조명은 시설장소의 출입동선을 고려하고 경비실에서 점멸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선정은 주택이나 건축물 수준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각실의 용도, 쾌적한 시야 및 분위기 조성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건축물 규모에 부합하는 시중 고급품 수준의 미려한 제품을 계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형광등용 램프는 32W 및 20W 램프를 사용하고, 형광등용 안정기는 고효율 전자식안정기("고"마크 제품)를 사용하고 개별형으로 계획한다.
- 단위세대 조명설비는 아래 기준에 준한다.
 - 세대내 조명설비는 실의용도 및 인테리어에 알맞은 건축화 조명(장식) 방식으로 계획하여 분위기조명이 연출되도록 한다.
 - 침실에는 고급 천장등을 계획한다.
 - 책상 전용 조명기구(스탠드)를 설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 현관에는 고급 천장등(인체감지형 센서 등)을 계획한다.
 - 발코니 전등은 천장직부등 또는 반간접조명용 벽부등을 계획한다.
 - 화장실(욕실)용 등기구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등기구를 계획한다.

- 화장실에는 환풍기를 계획하며, 환풍기용 스위치는 별도로 계획한다.
- 승강기 및 현관앞 통로와 입상계단에는 인체 감지 점멸형 등기구를 계획하여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명등에 텅스텐램프를 사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열설비

- 각 실의 콘센트 회로당 설치수는 내선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실 용도에 따라 배치위치가 적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콘센트는 고급형(와이드형)으로 계획 적용하도록 한다.
- 모든 콘센트는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전기쇼크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수구조의 콘센트를 계획하여야 한다.
- 대형부하(냉방기 등) 콘센트는 전용 회로로 구성하며, 히터, 세탁기, 청소기 등 중형 부하의 집중사용이 예상되는 주방, 기기실 등은 분기 회로당 콘센트의 수를 제한한다.
- 공용부분에 자판기 및 공중전화를 고려하여 콘센트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 동력설비

- 동력설비는 Unit 인출형의 동력반(MCC)을 기계실, 펌프실 등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 제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MCC 구성은 소방부하, 계절성부하, 일반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MCC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부 또는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유사시 사고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동력기기의 공급전압은 3상380V이고 단상은 220V이며 전동기의 기동방식, 기동전류 및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계획한다.
- 기계실, 펌프실, 지하저수용 등의 지하 동력배관은 충격 및 방수를 고려하여 노출을 계획하고, 전동기와의 접속은 방수형 가요전선관으로 계획한다.
- 주기기 및 예비기기는 각각의 개별 Unit설비 및 배선을 하고 상호 인터록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어방식은 기계설비에 준하여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전 등 소방기본법에 적용되는 배선은 내화전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 보안등 설비

- 옥외보안등은 단지주위 및 주차장, 주위도로 등의 필요한 개소에 조경과 건축물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단지내 유효면적을 충분히 발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 보안등주는 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존 보안등주와 통일을 기하되 보안등은 조도 및 연색성을 고려하여 시설하고, 등주 마다 접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 보안등 램프용 안정기는 에너지 절약형 안정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 보안등은 수동조작 및 일출, 일몰에 따라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안등은 절전을 고려한 격등제 점멸방식으로 회로구성을 계획 한다.
- 도로횡단 부분은 향후 증설에 대비하여 예비배관을 계획한다.
- 보안등 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며 배관은 지중매설 배관으로 계획한다.

. 접지 및 피뢰설비 계획

- 접지 시스템 설계 시 안전 등의 기능을 만족하고 최적의 시스템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접지 시스템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지 설계 전에 대지 저항을 등을 측정하여 대지 특성을 고려한 접지 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 피뢰방식은 미관 및 보호범위가 넓은 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전역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피뢰침용 접지, 피뢰기용 접지, 고압 기기류 접지, 통신용 접지등은 공용 접지(써지프로텍터 설비)로 시공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접지공사 후에도 접지저항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설비 계획

- 전력제어시스템은 전력설비의 각종 계기류와 차단기류, 계전기류 등의 제어 계측감시기능의 자동화를 구축하여 전력제어를 이용한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전시 자체내 전원을 콘트롤하여 주요설비의 장비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집중 감시 분산제어 시스템을 설계의 기본으로 계획한다.
- 기 설치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호 동일한 기능으

로 완벽하게 연동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력 중앙제어 및 감시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의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건물에 시설되는 변전설비의 전력계통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된 조명제어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감시실에서 연동 가능한 시설은 상호 연동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 전력제어 등과 상호 Interface하여 Time Schedule에 의한 우선처리 기능의 연동기능 고려 다음의 제어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 층별, 구역별, 용도별 Group Control
 - 일광 및 시간계획에 의한 일간, 월간, 연간 Schedule 제어
 - 화재 및 정전시 특정회로로 자동제어
 - 현장 Manual Switch에 의한 점멸
- 전력제어 시스템은 확장성 유연성이 풍부하여 ON-Line 상태에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설비 계획

-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기본법 및 제반 소방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감지기는 각 실의 크기, 높이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피난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피난유도가 되도록 시설하고, 정전에 대비한 배선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화재경보 수신반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관리실(중앙감시실)에 주수신반을 계획하고, 기존 관리동 주수신기에 금회 신축 회로를 추가 설치하여 관리동 근무자도 동시에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화재수신반은 저수위경보 및 펌프기동 S/W를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안내방송, 일반 방송등을 행하며 화재발생시에는 비상방송으로

로 자동 전환되어 일반방송은 모두 정지되며, 대피 소화 활동 등에 대한 방송을 하는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방법설비 계획

- 건물내 이용자 및 허가자에 한하여 별도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입자가 출입문에 시설된 리더에 인식시키면 허가자에 한하여 도어가 개방되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출입문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만 계획한다.
- 건물내로 진입하는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리더기에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화상이 전달되고, 인터폰 기능이 내장되어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방문자 확인 후 도어 열림장치에 의하여 출입을 허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어락, 리더기 등에는 별도의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정전시에도 시스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원을 계획하여야 한다.
- 출입구에 추후 추가로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용상 지장이 없고 데이터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확장성있는 제품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출입구 등의 실내의 주요장소에 대하여 카메라를 시설하여 이를 중앙 감시실 및 관리실에서 감시 및 녹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상 발생시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진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출입이력 기록 등 각종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설비 계획

- 소요대수 및 용량은 건축법 제57조(승강기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고, 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속도제어방식은 경제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제어방식(인버터)으로 하고, 정격속도는 120m/분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카는 조명등, 환기설비, 위치표시기, 인터폰설비, 비상조명 등 안전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
- 승강기 카내부의 벽판, 문틀, 출입문, 삼방틀 재질은 스텐레스(슈퍼밀러)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은 대리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용량, 대수, 특징 및 재료선택, 성능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승강기 설치계획서를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별 주 승강기는 장애자용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전담 운전원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운전장치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고장통보기능 및 정지대처요령 안내기능, 인터폰 동작 표시기능 등 각종 안전장치를 모두 반영하여 사용자가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간이 감시반은 적정장소(각 건물 관리실)에 설치하고 승강기 운행상태, 운행층, 운전중 및 정지, 고장 여부 등의 감시는 중앙제어실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9 통신설비계획

본 설계기준은 기숙사 신축에 따른 통신설비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 및 관련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표준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일반사항

- . 통신설비의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 본 설계의 사용자재는 재질과 기능이 우수한 자재를 우선 적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모든 기술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각종 통신케이블은 외부 전력유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 한다.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우선적용하며, 고효율 기기를 이용하여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한다.
- . LAN용 장비는 기존의 정보전산원 장비와 호환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전산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 구내전화설비는 기숙사 ZONE과 의대캠퍼스 ZONE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교환설비 및 번호체계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교환실 운영자 및 KT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과업의 범위

아래 각 공정에 대한 주요장비의 용량산출서, 규격서(성능, 제조회사 등), 신기술 혹은 주요시공법, 타 공법과의 경제성(LCC)비교, 예정공사금액 등을 산출한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서와 각 설계기준에서 별도로 제시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전화설비
- . LAN설비
- . 방송설비
- . TV공청설비

□ 적용법규 및 기준

-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 한국전기통신공사 기술기준 및 시행규칙
- . 전파관리법
- . 소방기본법
- . 기타 관련법규

□ 설계기준

- . 전화설비 계획
 -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및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한다
 - 전화회선은 실별, 용도별로 구분 종합 회선수를 산정, 간선케이블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로비, 현관, 휴게실에는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화수구를 설치하고 전원설비 계획을 하여야 한다.
 - 전화선로 구성은 각 대학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인출하여 각 층에 설치되는 EPS실을 통하여 각 실 수구에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전화번호별로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도록 계획한다.
- 전화기 설치에 본 공사에 포함한다.
- 각층 중간단자함에서 각실 전화용 수구까지는 UTP 케이블로 배선한다.
- 전화 간선 케이블 연결은 기존 통신실 MDF에서 기존 핏트, 공동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화 Outlet은 사용이 편리하고 보편화된 Modular jack을 계획한다.

LAN설비 계획

- 전체 네트워크 구성은 앞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서는 가능하면 전화와 LAN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이에 적합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 말단 LAN장비(HUB Rack Patch Panel)에서 Outlet까지의 배선은 UTP 케이블로 계획한다.
- 대학내 기존 전산망과 연결에 필요한 경우 모든 장비 및 시설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실 LAN Port는 용도별 필요 수량만큼 시설하고 Outlet은 사용이 편리하고 보편화된 Modular jack을 계획한다.
- Rack에는 Patch Panel 과 Switch 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외부로부터 분기된 광케이블을 접속하는 광분배함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 각층 EPS실외에 각 실에 별도의 LAN장비가 설치되는 장소(PC실등)에는 전용 허브를 설치하고, 그곳에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Rack에 설치되는 라우터 및 백본 스위치장비, 스위칭 허브 등 기존 LAN 설비와 호환성을 감안한 적절한 설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 금차 시설될 허브에서 주 메인 장비까지는 광케이블로 계획하여야 한다.
- LAN Port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사용에 불편이 없는 케이블로 계획되어야 한다.
- LAN케이블 포설은 통신전용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 허브장비에서 말단 Outlet 까지의 거리가 유효거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방송설비 계획

- 동시방송과 국부방송, 비상방송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운영방법은 사실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별도 회로를 구성토록 계획하고 주요실 용도에 따라 별도의 방송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전관방송 AMP는 RACK형으로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학교내 기 설치되어있는 학생자체 방송국 방송실 주 앰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관리실(또는 경비실)에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어는 간편하게 조작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기숙사 방송설비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를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 건물 주위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옥외 방송시설을 하여야 한다.
- 방송 앰프설비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 마이크로폰 : 다이내믹형(비상용은 벽걸이형)
 - AM/FM TUNER
 - CD PLAY
 - CASSETTE DECK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한 더블)
 - SIREN & CHIME : 자동 SIREN(민방위규격), 4타음 CHIME
 - MIXER AMP 및 MAIN AMP
 - MONITOR 반 : 방송상태 CHGECK용
 - 전원 및 충전장치 : 충전장치는 전자동식(과충전 및 과방전방지회로, 상용 정전시 자동절체 및 자동복구) 충전지 용량은 전 세대 30분 이상 방송 가능 용량
- 스피커 설비는 아래에 의한다
 - 출력은 세대내 유효청취 가능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스피커는 기숙사의 각 세대, 지하실, 승강기홀 등에 설치하며 천장 또는 벽부 형으로 한다.
 - 방송설비는 소방법상 비상경보 설비로서의 기능이 되도록 한다.

· TV공청설비 계획

- TV공청시설은 공영방송설비를 갖춘 방식을 채택하며 공중파방송, 위성방송 시스

템 등 모든 방송이 양호하게 시청되도록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배선은 고발포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며, 구내 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 공용시설에도 TV수구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 TV수구는 소요가 예상되는 모든 실에 설치한다.(단, 2인1실은 제외)
- 건물내 간선 및 분기선로는 각종 복도 및 EPS실에 시설되는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배선하고 실내 유니트에는 배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포설한다.
- 각 실별 시설 기준은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5.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5.1 업무범위

□ 사업시행자는 스스로 설계한 내용에 입각하여 건설과 감리를 실시하고 제안한 집기 및 비품을 설치하고 정비하도록 한다.

.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와 설계도서, 실시협약에 체결된 내용에 따라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감리자와 시공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공사감리자는 건설기술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상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반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를 태만하여 주무관청이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7일 이내에 적법한 감리자로 교체해야 한다.

□ 감리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 설계 및 시공도면, 이와 관련된 문서의 관리·감독
- . 합의된 설계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에 대한 감독
- . 해당 부지 이외 작업장에서의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off-site fabrication)를 포함한 모든 건설 및 설치작업.
- . 사업자의 사업관리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감독
- . 건물, 시스템 혹은 장비의 모든 테스트 및 시운전(commissioning) 관련
- . 기타 협약서 및 성과요구수준서에서 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5.2 건설기간

□ 공사 착수 후 730일 이내

□ 건설기간의 변경

- 사업자가 불가항력 또는 사업자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공기(工期)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사업기간의 변경, 공사기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공기 지연 시 실시협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5.3 일반사항

□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환경오염, 민원의 처리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공계획 수립 시 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고 필요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사업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설공사 안전시공 지침, 건설공사 공중재해 방지대책, 건설 부산물 적정처리 방안 등을 감안하고, 각종 기준 등을 참조하여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소음, 악취,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고 시행토록 한다.

5.4 착공 전 요구수준

□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완료하여 본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주변영향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 각종 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 전에 상세공정표등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현장조직표 : 2부

- . 착공계(공정표 첨부) : 2부
- .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 명부 : 2부
- . 가설공사계획서 : 2부
- . 시공계획서 : 2부
- . 품질관리계획서 : 2부
- . 안전관리계획서 : 2부
- . 각 공종별 주요기자재일람표 : 2부
(자재명, 규격, 성능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 하도급업체일람표 : 2부
- . 감리단의 조직 및 참여기술자의 이력 : 2부
- . 보험가입계획서 : 2부

※ 단, 위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주무관청에 변경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은 것을 공사감리자가 주무관청에 제출·보고한다.

- 건설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계획을 보상 대상물, 예정가격, 부보금액, 기간 및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함
 - 건설시 보험으로 건설공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5.5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 일반사항

- . 각종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해야하며 공사현장에 공사기록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 사업시행자는 공사시공 상황을 매일 주무관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 전 설명 및 사후보고를 실시한다.
- . 사업시행자는 매주 공정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정회의에 임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공사현장에서 시공확인을 할 수 있다.
-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서류를 해당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 공휴일 야간 등의 공사시공계획서 : 2부
 - 자재 또는 기기사용승인신청서 : 2부
 - 착공 전 제출된 주요자재일람표에 준하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주무관청의 의견에 따른다.
 - 시공 상세도 : 2부
 - 주요 구조부, 주요 마감부, 공종간 간섭이 이루어지는 부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 건설폐기물처분계획서 : 2부
 - 잔토처리계획서 : 2부
 - 각종 시험결과보고서 : 2부
 - 주요공사시공계획서 : 2부
- ※ 단, 위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은 것을 공사감리자가 주무관청에 제출·보고한다.

□ 품질관리

-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시험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으로 함.

□ 공정관리

- 사업시행자는 공기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정계획(CPM 또는 PERT 기법)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담팀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복구토록 하여야 함.

□ 공사현장 안전관리

-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현장 환경관리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분진, 소음, 진동 및 토양 오염방지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상황을 주무관청에 매월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한다.
- 준공검사는 감리자가 시행하고 이때 주무관청이 입회한다.

□ 기타

- 공사중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진다. 단, 주무관청이 책임을 져야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현장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한다.

5.6 준공 후 요구수준

□ 준공예비검사 실시

- 사업시행자는 기기, 기구, 비품등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한다.
- 사업시행자에 의한 예비검사는 실시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예비검사 및 기기, 기구, 비품 등의 시운전에 입회한다.
- 사업시행자는 예비검사 및 기기, 기구, 비품등의 시운전 결과와 성능에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 주무관청에 의한 준공확인

- 공사 감리자는 주무관청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준공검사는 공사감리자가 설계도서, 협약서,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해 실시한다.
- 사업시행자는 기기, 기구, 비품 등의 취급 및 시운전에 관하여 준공후 운영관리자에게 별도로 설명을 실시한다.

□ 준공도서 제출 목록

- . 준공계(준공조서 및 준공사진 포함) : 2부
- . 공사기록사진 : 2부
- . 각 공종별 준공도 : 1식
- . 각종 기기, 기구 등의 유지관리메뉴얼 : 2부

□ 제반사항 미 이행시 조치

- .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품질이 미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건설임무완료 보고서를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는 재시공 조치함.

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6.1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수시 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된 시간에 따라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6.2 일반사항

-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유지관리업무의 전반적 공통성과는 다음과 같음
- . 성과요구수준서 외에도 “시설관리 매뉴얼”, “건축물 유지관리 지침”, 등의 최신 판 점검항목을 사업시행자의 판단으로 적절히 참고하여 건축물, 설비 등을 점검·보수함
 - . 유지관리는 사후보전이 아닌 예방보전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
 - . 학습 및 기숙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의 건강 피해를 방지해야 함
 - . 시설이 가지는 소정의 성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함.

- . 시설의 악화로 인한 위험 및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 기타 유지관리서비스 질과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창의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함
 - . 운영기간 종료직후(약 1년 이내)에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함
 - . 점검을 통해 운영기간 중 수선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진단·보고를 하며, 주무관청이 정한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함.
 - . 경상보수·수선 작업 시는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 후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작업을 착수해야 함
 - . 유지관리자 전원은 시설사용자 및 내방자에게 친절·상냥하게 대해야 하며 적합한 복장 및 장비, 명찰을 착용해야 함
 - . 유지관리 각 업무의 책임자는 필요시 주무관청 책임자에게 사전·사후보고를 하고, 협이가 필요한 항목들은 상담을 실시함. 또한 각 업무기록을 보관하고 주무관청등의 요청 시 신속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 유지보수작업 중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고 시 기물파손, 인명피해가 생길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신속·적절한 초기대책을 취하여야 함
 - . 운영기간 중 설비이상 등의 이유로 주무관청 담당자로부터 요청이 오면 유지관리자는 업무계획에 없더라도 신속하게 출근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 . 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지침에 기재가 되지 않은 항목들은 그때마다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함
 - .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결과를 주무관청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항목들에 대한 업무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각종 항목에 대하여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3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시설물의 서비스 요구수준을 토대로 하

여 사양서 제출해야 하며 협상 시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사양서를 확정하게 됨.

-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게 되며 주무관청은 이를 토대로 하여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함.

6.4 운영 및 유지관리 내용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으로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일상 점검 및 운전, 정비와 복구, 개량과 보수·보강 등을 포함한다.

6.5 용어의 정의

-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보수 :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 복구 : 재해 등의 요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
-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 개량 :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 내구성 : 시설물의 성능, 기능저하의 시간경과 변화에 적응하는 성능
- 내용연수: 시설물과 부대설비가 건설 후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6.6 건축물 관리요구 수준

□ 업무대상

-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 외부 각종 마감 재료를 적정한 상태로 관리하는데 있음
- 본 업무는 건축물의 결함에 대한 보수, 복구, 보강, 개량, 정기적 또는 일상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 요구수준

- 건물시설의 부실한 관리(누수, 파손, 붕괴위험 등)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시설이용자들의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불쾌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수, 교체 등 일련의 업무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켜야 함.
- 협약된 요구수준에 맞는 예방적이며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대상 생활관 시설을 그 본래의 기능 및 안전과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서비스가 항상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보수, 수리, 교체, 개량 등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점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기적 또는 상시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이상 유무를 발견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보수 및 수리, 교체, 개량은 물리적·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시설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사고 등에 의해 파손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여 원래의 기능과 구조로 회복시키는 업무이며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적기에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 일반에 관한 세부요구수준은 다음과 같음.
 - 내벽·외벽(기둥포함)
 - 마감재 및 칠의 팽창·벗겨짐, 갈라짐, 파손·변형, 녹·부식, 백아화(chalking), 백화(白樺)의 유출 등이 없도록 해야 함.
 - 누수·곰팡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바닥
 - 마감재의 팽창·벗겨짐, 갈라짐, 부식, 극단적 마모 등이 없도록 해야함.
 - 그 외 각 공간특성에 맞는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지붕(평지붕, 손잡이, 톱라이트 등을 포함)
 -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함.

- . 루프드레인, 홈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 . 평지붕의 마감재, 손잡이, 톱라이트 등에 파손·변경, 열화, 갈라짐 등이 없도록 해야 함.
- . 톱라이트는 일사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함.
- 천정
 - .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함.
 - . 마감재나 칠의 팽창·벗겨짐, 갈라짐, 파손·변형, 녹·부식, 백아화, 백화의 유출 등이 없도록 해야함.
- 건구(문,창,창틀,셔터,가동칸막이 등)
 - . 흔들림·느슨함이 없고 가동부가 부드럽게 열리도록 해야 함.
 - . 소정의 수밀성(水密性)·기밀성·차단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 각 부분의 파손·변경, 갈라짐, 마감재의 변색, 퇴색·열화, 녹·부식, 결로(結露),곰팡이 발생, 부품 낙탈 등이 없도록 해야 함.
- 계단(외부계단 포함)
 - . 개폐·열쇠장치가 언제나 작동하도록 해야 함.
 - . 통행에 지장·위험이 없도록 해야 함.
 - . 마감재, 손잡이 등의 파손, 변형, 느슨함 등이 없도록 해야 함.
- 건물·붙박이가구 등의 칠, 마감
 - . 칠·마감재의 팽창·벗겨짐, 변색·퇴색, 열화 등이 없도록 해야 함.
 - . 칠이 풍화로 인해 가루가 되거나 녹이 슬거나 변색, 빈번한 벗겨짐이 있을 시에는 보수해야함.
- .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생활관 시설물은 장기간에 걸쳐 보수 등을 실시해야 하므로 건물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수적임. 보수의 기록 및 관리는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많은 이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함.
-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관리 업무 추진 시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표준에 따라서 세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 및 협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

담하여야 함.(주무관청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구조체에 이상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 중량의 시설물을 새로이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
- 바닥에 걸리는 하중이 증가하는 경우
- 증·개축, 형태변경(모양) 및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기존의 벽체·바닥 철거하거나, 부분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 인근대지에서 건물의 기초보다 깊게 굴착하는 공사가 행해지는 경우
- 건물주변의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점검기록은 5년 이상, 보수관리 기록은 15년 동안 보관함.
- 상기 보수관리 기록에는 점검기록, 보수기록, 사고기록, 영선공사 완성 도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 양식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수리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부분을 반영해 보관하여야 함.

6.7 설비관리 요구수준

□ 업무대상

- . 설비관리는 배수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방재설비, 승강기 등의 운전·감시·점검 및 운영업무를 포함함.

□ 요구수준

- .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기후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하고, 난방 및 환기, 냉온수의 공급, 배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설비에 의한 내부 소음도 관련규정을 만족시켜야 함. 또한 지속적인 전기의 공급, 설계 요구 수준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운영기간 중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임.
- . 생활관 시설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조급배수설비·전기설비·기계설비·방재설비 등의 건축설비 및 공사에 사용된 비품(불박이 가구 등)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유지관리·감시, 점검, 대응(보수, 수리, 교환, 분해정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설비 관리는 규정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감시업무 계획서
-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 정기점검·측정·정비작업 계획서 등

· 기계설비의 경우

- 열원장비 용량은 건물의 부하조건을 만족하도록 유지되고 에너지절감이 용이하도록 유지해야 함.
- 환기설비는 실내 공간 오염원 제거가 용이토록 유지해야 함.
- 급수는 단수 시 대책을 위해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해야 함.
- 급수, 급탕 수압은 전체 샤워기 및 프레쉬 밸브용 적정 수압을 확보토록 유지해야 하며, 급탕공급은 원할 하도록 유지해야 함.
- 위생설비는 물 사용량 절감이 용이토록 유지되어야 함.
- 배관류는 배관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 시 대책을 세워 유지해야 함.
- 덕트는 장비의 고장이 없도록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지하시설의 환기설비는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이 가능토록 유지해야 함.
-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위생 기구는 기본적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일반 장비류는 장비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펌프류는 펌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자동제어의 성능이 설계도서와 같이 발휘되어야 함.

· 전기설비의 경우

- 수변전 설비 용량은 부하용량에 수용율을 적용한 용량의 110% 이상, 변압기 운전율이 70-90% 정도를 유지토록 해야 함.
- 비상발전기 용량은 소방법, 건축법에 의한 용량 외에 고조파 나성을 위한 용량과 영업상 필요한 용량 추가 적용하여 유지토록 함.
- 조명장비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감이 효과적으로 유지, 실별 적정 조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접지설비는 접지 종별로 최소 저항치를 하회토록 유지해야 함.
- 방범설비는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범설비의 운용을 유지해야 함.
- 전기 자동제어는 자동운전 및 에너지절감 등 종합적인 자동제어 운전이 되도록 유지해야 함.
- 조명기구에는 각 실별 기준조도 150%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
- 접지시설은 접지극 및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준접지 저항치 이하로 유지관리 되어야 함.
- 배전반은 차단기, 배선용단자, 합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함.
- 배선은 전선관내에 보호되고 절연피복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설비의 작동은 완벽한 성능이 발휘토록 유지해야 함.
- 경보설비는 완벽한 성능이 발휘토록 유지해야 함.

. 건축설비 관리는 규정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 일상 순시점검업무 계획서
- 정기점검·측정·정비작업 계획서 등

. 각 시설·실내의 용도, 기후변화, 이용자의 쾌적함 등을 고려한 운전감시계획서에 따라 각 설비를 조작하여 효율적인 운전·감시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 설비마다 적절한 운전기록을 해야 함.
- 운전시기 조정이 필요한 설비는 주무관청 책임자와 협의하여 운전기간·시간 등을 결정함.
- 각 설비 운전 중 점검이나 조작, 사용상 장애가 될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발견시에는 제거 또는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취함.

. 각 설비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함.

. 각 설비 및 공사에 사용된 비품은 언제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적절한 설비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대응함.

- 점검을 통해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어떠한 악영향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수리·분해정비·조정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기기 일람표를 준비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설비관리 기록, 작성,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설비관리 관련 인원배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함
- 적정 설비관리를 위한 기록유지 및 비치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음

- 검사기기 취급일지
-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점검일지
-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및 환경진단일지
- 도시가스 점검일지
- 기계설비 순찰일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고압가스 점검일지
- 기계설비 순찰 상황표
- 냉동기 운전 및 점검일지
- 기계실 운영일지
- 안전교육일지
- 전기 운전일지
- 일일 점검일지
- 발전실 운전 및 점검일지
- 방재일지
- 구내교환기 운용일일 점검부
- 중요부서별 PNL 등 일일점검일지
- MCC 및 MOTOR 점검일지
- 절연저항 기록부
- 안전교육일지

Motor
Control
Center

↓

모든 모터는 자동시스템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

- 승강기 일일점검일지
- 변전실 점검일지

6.8 옥외 관리 요구수준

□ 업무대상

- . 사업부지 내의 주차장, 도로, 공작물, 공동구, 배수로, 하수관거, 오수관로, 옹벽,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함

□ 요구수준

- . 생활관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항상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내 부대시설 등이 적정하게 점검, 보수, 수리, 교체, 녹지의 보호와 육성 및 처리되도록 관리되어야 함.

- 주무관청은 사업자시행자가 옥외설비(문, 손잡이, 펜스, 벤치, 옥외소화전, U형 측구, 기념비 등), 부지 지반(운동장, 포장, 수목 등), 지중설비(매설배관, 도랑, 맨홀, 상하수도 등)의 본래 기능, 안전, 미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사업자시행자가 공작물(각종사인, 폴, 외등, 주차장, 자전거주차설비, 냉각탑, 운동장내 운동시설, 동물사육장, 운동장화장실, 화단, 체육창고, 굴뚝, 식수대, 옹벽 등)을 기능·안전·미관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식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하기의 작업들을 통해 생활관 단지 내 녹지를 보호·육성·처리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캠퍼스 환경을 유지해야 함

- . 시비, 관수, 병해충방제 등 : 상황과 식물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비·관수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식재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 . 가지치기, 다듬기, 제초 등 : 식재가 바람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수목종류에 따라 가지치기, 다듬기, 제초를 함. 이밖에도 시설 미관을 유지하고, 식재를 아름답게 꾸며야 함.

- . 양생 : 높은 나무나 긴 줄기 등이 강한 바람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하고 수목종류에 따라 겨울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 기타 특별히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 . 식재 유지관리 방안, 병충해 방지방안 등

- 사업시행자는 옥외시설 관리 기록, 작성,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내에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누수 발생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누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옹벽, 경사면에 대하여는 특별히 집중호우 등에도 안전하게 형상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9 청소업무 요구수준

□ 업무대상

- 대상 사업부지 전체 및 학생생활관 내부 등 일상적인 청소(출입문이 포함된 건축물 전체) 및 정기 청소(전체 건축물 외부창문 청소 포함)를 포함 함.

□ 요구수준

- 생활관시설의 청결함과 사용자 및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운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는 적절한 안전장치 후 수행하도록 하고, 재활용 정책을 반영, 청소 중 설비, 집기부품, 부착물 등의 훼손,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고 청소 용품은 환경친화적인 것을 사용하여 함
 - 만일 청소 중 기물 등 파손 시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부담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함.
- 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는 학교보건법 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일상적인 청소 및 정기 청소는 각 학생생활관별로 업무범위, 업무방법, 시기, 특이사항을 기술하고 폐기물처리하는 시, 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 수집, 집적도록 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생활관 건물의 바닥, 천정, 창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조명기구, 휴지통, 배수설비, 외부의 포장면, 안내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청소주기와 청소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바닥(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포함), 벽, 천정(엘리베이터, 탐라이트 포함),

창틀 및 위 각 부분의 부대설비(손잡이 등) 등은 마무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기로 먼지, 쓰레기, 더러움, 얼룩, 녹 등을 제거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탐 라이트는 정해는 일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조명기구, 시계, 확성기, 환기구 등의 기계류는 먼지, 흙, 더러움을 제거하고 적정하게 기능하는 상태를 유지해야함.
 - 기타 부대설비(배수구, 사물함 등의 비품)는 먼지, 더러움을 제거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함.
 - 화장실(세면대, 거울, 위생도기를 포함)에서, 위생 도기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함. 기타 부분(세면대, 벽, 칸막이, 거울)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고 위생 비품(화장지, 비누)등의 교환 및 보충해야 함
 - 휴지통, 재떨이, 쓰레기통은 이용개시 이전에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눈에 띄는 부분에 더러움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함.
 - 배수설비(배수구, 배수관, 집수기 등)은 위생상 적절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쓰레기, 오물, 진흙 등을 제거해야함.
 - 외부(건물주면, 부지 내 포장면, 옥외 배수설비, 문, 안내판 및 부지경계 주변)는 부지 내의 쓰레기 등이 근처로 날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함. 현관 주변이나 중정 및 문, 부지 안내 판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 설비는 일상적으로 청결과 미관을 유지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화장실, 저수조 및 고가수조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함.(년2회 이상 청소 및 음용수 기준의 수질검사 시행)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생활관시설에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 폐기물은 전주시 및 전라북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리하고 소정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운반토록 하여야 함.

6.10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 업무대상

- 대상 사업부지 및 전체 생활관 시설물을 포함한 보안(경비) 및 위생관리를 대상으로 함.
 - 건축물 환경관리업무의 항목인 경우 공기청정도 측정, 수질검사, 배수설

비(수조) 청소, 실내 및 실외의 방역시설 등

- 해당 생활관 접근 주변도로의 안전성 유지
-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 화재에 대한 안전 및 대인 안전
- 병충해 박멸
- 창구(수위실 포함)업무, 순찰업무, 방재업무 등

□ 요구수준

- . 안전과 보안은 시스템화 되도록 하고 응급처치, 주차난 해소, 소방 및 화재, 주변 범죄예방 등에 대한 대책 등이 제시되도록 함. 또한 보안경비상 이상 발생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현장에 상황을 확인, 관계자에게 통보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생활관시설물의 위생적 환경관리를 실시하고, 쓰레기 처분 및 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포함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또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보존해야함.
 - 만일 환경위생 작업 시 기물 등을 파손 시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신속히 신고하고 사업자부담으로 원상복귀 시킴.
- . 필요할 경우 환경측정 방법, 수질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당해연도 및 매월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 위생관리 업무 감독을 실시함.
- . 계획 및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정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고, 지도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위생적 환경 유지 향상에 기여해야함.
- . 감독, 측정, 검사, 조사, 기타 활동에 따라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써 주무관청에 요구해야함.
- . 관리계획 실시보고서, 측정, 검사 및 조사 등의 기록 및 평가에 관한 서류, 관계 기관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해야함.
- . 환경 관계기관의 입회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는 검사에 참관하여 협력해야함.
- . 환경, 위생관리 점검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경비업무는 생활관시설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며, 공공 서비스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법 및 방재 경비를 포함하도록 함

- . 경비업무는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경비실 등의 창구에서 외부 방문자 접수, 안내, 출입관리 등을 수행하여 수상한 자의 진입 및 불필요한 진입 방지해야함. 또한 습득물, 유실물을 관리, 기록하여 정당한 주인에 대한 반환해야함. 열쇠의 수수, 보관 및 그 기록을 수행함
 - 시설 내외를 순찰하여, 불법 침입자, 수상한 자의 출입을 방지해야함. 불씨 및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점검, 각층 각실의 문단속 및 소등 확인, 긴급 시 피난의 방해가 되는 방치물의 제거, 이동 등 피난 동선 상시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또한 도난 사건, 파괴 행위 등 방지에 노력하며 만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하고, 순찰 중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학교 및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함.
 - 방재 시설비 기기를 취급함과 동시에 각종 경보기기 관리를 실시하는 등 평상시부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함. 또한 화재 등 긴급 시에는 적절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 연락해야함.
- . 경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11 기타 요구수준

□ 해체/폐기 관리

- . 사업범위 내 노후화된 시설 또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체/폐기하고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관리
- . 사업시행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 후 시행토록 함.

7 성과의 점검(Monitoring)

7.1 일반사항

- 사업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행이 협약에 따라 적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7.2 성과점검 방법

□ 정기 모니터링

- 주무관청은 매분기마다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 수시 모니터링

- 주무관청은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 설명요구 및 입회

- 주무관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운영기간 중,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 생활관 시설 등에 대해 그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해당 설명 및 확인실시를 위해 최대한 주무관청에 대해 협력함.
-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본 생활관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이 유지관리 사양서 혹은 운영사양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도에 대한 대응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 주무관청은 설명요구 및 설명실시, 입회 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업무보고서

-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양서 및 운영 사양서에 입각하여 본건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일보, 월보 및 반기보고서를 업무보고서로 작성함.
- 사업자는 작성한 일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보관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작성한 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 사업자는 작성한 반기 보고서를 반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7.3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 사업시행자는 설계착수 전에 참여자 명단 및 설계실적(경력, 참여사업, 기간 등), 설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기간 중 주요공정 및 공법, 주요자재선정, 공사비 단가산정(조달청 고시단가 및 실적공

사단가 적용),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설계와 관련된 평가결과 오류 및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기간 중 또는 시공 중이라도 주무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즉시 시행해야 하며, 동 사유로 공사비 등이 증액 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감리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실시설계 시 설계의도 반영여부, 재료, 설계수준 등은 협의를 거쳐 쌍방 확인하고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통신 등 각 분야별 검토과정을 거친다.
 - 건축분야 : 설계의도 반영
 - 기계분야 : 냉난방시스템, 급수·급탕방식
 - 전기분야 : 별도 변전실 유무
 - 소방분야 : 관계법규 검토
 - 통신분야 : 정보통신 등급

7.4 공사기간 중의 성과점검

- 본 사업에 참여할 공사감리자는 참여자 명단 및 감리실적(경력, 참여사업, 기간 등), 감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 중 주요공정 및 공법, 주요자재선정,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건설공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시공 및 공사품질 등이 관련 설계도서, 성과요구수준, 실시협약서, 기타 제반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감리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해야 하며, 본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연장은 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진다.

- 공정관리

- 공사 착공 전 전체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검토를 받는다.
- 공사 진행 중 매주 금요일에 그 주 작업실적 및 다음주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검토를 받는다.
- 공사 진행 중 매달 5일까지 전달의 작업실적과 다음달 공정계획서를 제출한다.

- 각 공정표를 검토하여 실공정이 예정공정의 15%이상 지연될 시 수정공정표와 원인 및 대책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 월간공정 지연이 10%이상이고 3회 지연될 시 주무관청은 현장대리인 및 감리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 설계도서 및 실시협약에서의 품질관리 계획은 최저수준의 품질을 표시한 것이므로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용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제조물은 해당 공인기관의 품질시험(규격, 성능, 안전 등)등 제반 시험관련 사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안전 및 환경, 민원관리

- 공사착공 전 안전, 환경, 민원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 매달 5일까지 전 달 안전관리 시행내역과 성과표, 환경관리 시행내역과(건설폐기물 포함) 성과표, 사용실적서 및 증빙서, 각 일지를 제출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고, 다음 달 제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현장에는 안전장구와 지급대장, 안전관리, 환경관리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제반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에 따른 환경문제 및 기타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하여 시행한다.

7.5 운영기준 중의 성과점검

- 운영기간 중의 성과 점검은 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수준은 설계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에서 기 언급한 내용 또는 실시협약 시 합의된 사양서에 의하여 시행할 것임.

- 점검대상

- 유용성분야(6개분야)

- ① 실내온도
- ② 실내조도
- ③ 수질
- ④ 병충해구제
- ⑤ 실내 옥외시설물의 이용성
- ⑥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 이행정도

. 안전성 및 내구성 분야(5개분야)

①안전점검실시 ②건축마감재 상태 ③기계설비 ④전기 통신 평가기준 ⑤소화설비

. 서비스만족도 분야(2개분야)

①불평 불만처리 ②설문조사

- 방법

. 사업자시행자의 입회하에 주무관청에서 관련서류 및 현장방문,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8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8.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 주무관청은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한다.

. 평가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사업자(SPC, 운영사), 이용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검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음.

□ 성과평가의 항목은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실시한다.

□ 유용성

. 실내온도, 실내조도, 수질, 병충해구제, 실내 옥외시설물의 이용성,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 이행정도등 6개요소를 평가한다.

<표 1> 유용성 평가방법

구분	등급	점수	수준	기준치
유용성	A	10	· 최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55점 이상)	0.4
	B	9	·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50점 이상)	
	C	8	· 환경이 불량한 상태 (40점 이상)	
	D	7	· 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 (35점 미만)	

<표 2> 유용성 세부 평가항목

항목	A (10)	B (9)	C (8)	D (7)
1. 실내온도				
2. 조도상태				
3. 수질상태(물탱크 청소)				
4. 병충해 구제				
5. 실내 및 옥외시설물 이용상태				
6. 주무관청의 시정요구 이행정도				
계				

<표 3> 실내 온도에 관한 평가기준(2-1)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10	· 기준온도 이상유지	
B	9	· 기준온도 이하이나 추위(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	
C	8	· 기준온도 이하(이상)이고 추위(더위)를 느끼는 수준	
D	7	· 기준온도 이하(이상)이고 추위(더위)를 느껴 사용자가 활동을 못하는 수준	

<표 4> 조도에 관한 평가기준(2-2)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10	· 용도별 기준조도에 적합	
B	9	· 용도별 기준조도에 5% 부족	
C	8	· 용도별 기준조도에 10%부족	
D	7	· 용도별 기준조도에 15%부족	

<표 5> 수질에 관한 평가기준(2-3)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10	· 항상 급수는 제공되고 있으며, 수질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전항목이 적합해야 함.	
B	9	-	
C	8	-	
D	7	· 항상 급수는 제공되고 있으나, 수질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1개 이상 부적합함.	

<표 6> 청소·위생(2-4)

(병충해구제, 화장실 관리, 쓰레기 수거포함)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의 모든 곳이 안전하고 깨끗이 최상으로 유지되며 위생상 위해됨이 전혀 없음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없음). ·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의 방역 서비스를 공동주택관리규정 이상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있음. 	
B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의 모든 곳이 안전하고 다소 깨끗하게 유지되며 위생상 위해됨이(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일부 있음) 없음. ·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의 방역 서비스를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하고 있음. 	
C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모든 곳이 안전하나 일부 불결하게 유지됨. 위생상 일부 위해성이 있음.(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일부 있음). ·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의 방역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고 있음. 	
D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불량한 상태이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공동구역포함)의 방역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표 7> 실내 및 옥외시설 이용가능성 평가기준(2-5)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10	· 시설물들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청결하여 쾌적함을 느끼며 작동 및 사용 가능함.	
B	9	· 시설물들의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청결은 미흡함. 그러나 시설은 작동 및 사용 가능함.	
C	8	· 일부 시설물들이 청소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또한 일부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D	7	· 시설물의 사용 및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표 8>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정도 평가기준(2-6)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10	·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최상으로 이행함.	
B	9	·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였으나 보통수준임.	
C	8	·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소 지체하거나 다소 불성실하게 이행함.	
D	7	·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우 지체되며 매우 불량하게 이행함.	

□ 안전성 및 내구성

·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적기 시행, 적절한 보수, 방재대책의 수립, 벽 또는 천정의 누수, 기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표 9>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방법

구분	등급	점수	수준	가중치
안전성 및 내구성등	A	10	· 세부항목 평가점수가 9.5점 이상	0.4
	B	9	· 세부항목 평가점수가 9점 이상	
	C	8	· 세부항목 평가점수가 8점 이상	
	D	7	· 세부항목 평가점수가 7점 미만	

※ 세부항목 합계 : (안전점검00점×0.6+ 방재대책00점×0.2+ 건축마감00점×0.05+ 기계설비00점×0.06+ 전기설비00점×0.06+ 소화설비00점×0.03)

가.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준용하여 수행해야 함.

<표 10>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 안전점검(정기점검-분기에 1회, 정밀점검-3년에 1회)을 실시하고 결과처리 후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0.3
B	9	· 안전점검(정기점검-분기에 1회, 정밀점검-3년에 1회)을 실시하고 결과처리 후 문제점이 없는 보통의 상태	
C	8	· 안전점검(정기점검-분기에 1회, 정밀점검-3년에 1회)을 실시하고 결과처리가 미흡한 상태	
D	7	· 안전점검(정기점검-분기에 1회, 정밀점검-3년에 1회)을 실시하고 결과처리가 불량한 상태	

※정밀점검은 본 사업에서 제외, 단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은 실시,

나. 방재대책에 대한 평가기준

- 방재대책은 화재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사안임. 안전성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만족된 것으로 하여 고려하지 않고 피난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평가함

<표 11> 방재대책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 현행 법규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 - 방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상태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13점 이상)	0.3
B	9	- 현행 법규나 기준과 동일한 수준 - 방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12점 이상)	
C	8	- 현행 법규나 기준에 다소 미달하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 - 방재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미흡함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9점 이상)	
D	7	- 현행 법규나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상태 - 방재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불량함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9점 미만)	

- 세부항목으로 피난일반사항, 수평피난시설, 피난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피

난용이성을 위해 유도표지상태, 피난경로의 조명상태, 옥상대피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며, 수평피난시설에서는 피난통로상의 장애물 여부, 피난설비 설치여부 등을 평가함.

<표 12> 유도표지상태 평가기준(11-1)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유도표지가 명확하고 식별가능한 양호한 상태	5
B	유도표지가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식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	4
C	유도표지가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3
D	유도표지가 대부분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2

<표 13> 피난경로의 조명 상태 평가기준(11-2)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	-
B	조명상태가 양호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4
C	조명상태가 약간 불량하여 피난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3
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2

<표 14> 비상통로상의 피난 장애물 유무 평가기준(11-3)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	-
B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	4
C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이 조금 있지만 피난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	3
D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신속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	2

다. 건축 마감 평가기준

- 건축마감은 지붕, 천장, 외벽, 내벽, 바닥, 창호의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마감재의 상태를 평가하며 도장, 타일(벽돌포함), 석재, 금속재, 목재, 철제 등의 유지 보수 상태를 평가함.

<표 15> 건축 마감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계단·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양호상태	0.1
B	9	·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계단·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일부가 미흡한 상태	
C	8	·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계단·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미흡함.	
D	7	·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계단·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불량함.	

라. 설비 평가 기준

- 평가시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에 따른 일반장비류, 펌프류, 자동제어, 배관, 덕트류, 주차장환기, 탱크류, 위생기구, 접지설비, 배전반, 조명기구, 배선 등의 유지보수 상태를 평가함.

<표 16> 기계설비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기준치
등급	점수		
A	10	·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냉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 등의 유지관리가 양호함.	0.1
B	9	·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냉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 등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함.	
C	8	·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냉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함.	
D	7	·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또한 냉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 등의 유지관리가 불량함.	

<표 17> 전기·통신설비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기준치
등급	점수		
A	10	· 전기·통신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양호함.	0.1
B	9	· 전기·통신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보통임.	
C	8	· 전기·통신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미흡함.	
D	7	· 전기·통신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불량함.	

<표 18> 소화설비 평가기준

평가 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기준치
A	10	·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양호함.	0.1
B	9	·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일부 미흡함.	
C	8	·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미흡함.	
D	7	·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후 결과 처리가 불량함.	

□ 서비스 만족도

-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불평·불만 접수건수, 이용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문조사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표 19>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구분	등급	점수	수준	기준치
서비스 만족도	A	9 이상	· 요구수준 이상으로 만족	0.2
	B	8 이상	· 요구수준 이하이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수준	
	C	7 이상	· 요구수준 이하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소 있는 수준	
	D	7 미만	· 불평·불만이 많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	

※ 세부항목 합계 : (고객만족설문조사00점×0.4+ 이행여부00점×0.1+ 업무보고서00점×0.5)

가. 서비스 만족도의 세부 평가항목

<표 20>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한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 불만족 항목이 없는 경우	0.4 (0.5)
B	9	· 불만족 항목이 3개미만인 경우	
C	8	· 불만족 항목이 5개미만인 경우	
D	7	· 불만족 항목이 5개 이상인 경우	

※ 불만족 답변 : 세부항목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중 10%이상 불만족한 것으로 답변한 것을 말함
 ※ 가중치는 나.이행여부 항목이 없을 경우 0.5로 산정

<표 21> 이용자 관련 설문조사 세부항목

구분	구분	평가점수		
		입주자 만족	방문자 만족	불만족
1	생활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의 만족도			
2	생활관 시설에 대한 조명, 온·습도, 분진·소음, 환기의 만족도			
3	생활관 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눈, 비에 의한 청소상태 포함)			
4	정전 시 지체없는 전력·가스의 공급여부			
5	급수관련(수질오염, 단수 등)의 만족도			
6	비상시 화재경보기 및 각종 소화장비 작동여부			
7	주차 등 출입의 만족도			
8	하자신고시 접수 및 처리업무에 만족도			
9	위생관리(해충구제 등)에 대한 만족도			
10	맨홀, 하수도의 악취 등 오염방지에 대한 만족도			
11	청소에 대한 만족도			
12	실내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13	옥외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14	경비실의 순찰 및 방법 등 보안에 대한 만족도			
15	부속시설(식당)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주 : 1) 같은 항목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0%가 불만족일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평가자로부터 서면으로 사유를 받아야 함
 2) 설문 시행시기는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고 사용자의 30%이상 조사되어야 함.

· 불평·불만 사항은 입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시 업무보고서의 일보에 접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명기해야 함. 단,

접수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고객설문조사 가중치를 0.5로 산정해야 함.

- 아래 항목은 주무관청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입주자의 면접 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됨.

<표 22> 불평·불만접수 관련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 불평·불만 서면접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사용자에게 확인하고 시정조치 되었음.	0.1
B	9	-	
C	8	· 불평·불만 서면접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사용자에게 확인 했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음.	
D	7	-	

- 아래 항목은 전 분기 운영보고서에서 주무관청이 요구한 유지관리 및 운영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당기분기에 작성한 일보 및 월보, 반기보고서에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함. 이를 주무관청은 실사확인 후 평가를 실시함.

다. 업무보고서 이행 평가

<표 23> 업무보고서 이행평가 표

평가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지적사항이 없었거나 있을 경우 전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있고 내용이 세부적이고 충실함.	0.5
B	9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전부 이행했음. 그러나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있고 내용이 보통 수준임.	
C	8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부실함.	
D	7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없음.	

※ 관련자료는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임(업무보고서의 양식은 협약에서 정함)

8.2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 함.

6.631.9K2
525-21
0410220
이민영

-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지불방식을 도입함.
 - 해당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주무관청은 성과요구수준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을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불이행이 반복 되거나 서비스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 대가의 차등지급 기준
 -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평가 함.
 - 이 때 세 개 항목의 가중치를 운영초기부터 10년간은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를 0.4, 0.4, 0.2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0.2, 0.6, 0.2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음.

<표 24>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구분	등급	점수	인센티브 및 감액 기준	평가항목 (중분류)
총점	A	9 이상	· 서비스 대가 100%지급	· 유용성 (예; 가중치 0.4) · 안전성 및 내구성 (예; 가중치 0.4) · 서비스 만족도 (예; 가중치 0.2)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는 "D" 등급 부여 ※분기별 지급으로 가정
	B	8 이상	· 서비스 대가 95%지급 ·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이내에서 가산하여 지급	
	C	7 이상	· 서비스 대가 80%지급 ·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이내에서 가산하여 지급	
	D	7 미만	· 서비스 대가 지불 정지 ·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이내에서 가산하여 지급	

□ 예를 들어 유용성이 A등급(10.0), 안전성 및 내구성이 B등급(9.0), 서비스 만족도가 C등급(7.0)인 경우의 총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총점 = 10.0×0.4 (유용성) + 9.0×0.4 (안전성 및 내구성) + 7.0×0.2 (서비스 만족도)

= 9.0 ∴ 총점을 고려해 볼 때 총괄 평가등급은 "A"

· 따라서 대가 지급은 상기에 언급한 "A"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 조치 가능함.

[부록0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전 북 대 학 교

전주교육대학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 및 실행에 대해 전반적인 심의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사항) 평가위원회는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유용성 평가
2.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3. 서비스 만족도
4.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유지관리계획서 및 비용
5. 기타 세부 평가내용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제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본 사업 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측 2명,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 대표 1명,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선임한다.

②이용자 대표는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인 학생들의 자치회에서 선정 추천하며,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평가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성과의 평가 및 심의) ①평가위원회는 성과의 측정, 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의 3개분야 대해 매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직전분기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위원장과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필요시 제3의 기관에 성과평가를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 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위원3분

의2의 찬성에 의해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본 사업의 서비스수준의 향상과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익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12월중까지 심의를 득한 후 집행키로 한다.

제5조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된 평가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영은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 각각 적용된다.

[부록0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

전 북 대 학 교
전주교육대학교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

1. 성과평가결과와 운영비 지급금 지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되 해당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성과요구수준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사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이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운영비 지급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급금 차등지급 방안

① 운영비 지급금은 성과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차등지급하며,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의 세 개 항목의 가중치를 운영초기부터 10년간은 0.4, 0.4, 0.2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0.2, 0.6, 0.2로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운영비 지급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운영비 지급금 차등지급 방안

구분	등급	점수	인센티브 및 감액 기준	평가항목 (중분류)
총점	A	9 이상	· 운영비 지급금 100%지급	· 유용성 (예; 가중치 0.4) · 안전성 및 내구성 (예; 가중치 0.4) · 서비스 만족도 (예; 가중치 0.2) ※분기별 지급
	B	8 이상	· 운영비 지급금의 95%지급 ·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C	7 이상	· 운영비 지급금의 80%지급 ·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D	7 미만	· 운영비 지급금 지불 정지 ·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예를 들어 유용성이 A등급(10.0), 안전성 및 내구성이 B등급(9.0), 서비스 만족도가 C등급(7.0)인 경우의 총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총점 = 10.0×0.4 (유용성) + 9.0×0.4 (안전성 및 내구성) + 7.0×0.2 (서비스 만족도)

= 9.0 ∴ 총점을 고려해 볼 때 총괄 평가등급은 "A"

• 따라서 운영비 지급금은 상기에 언급한 "A"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